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산업 대응

2016. 6. 28

류건식





Contents

- I 시장현황 및 최근 환경변화
- II 환경변화와 해외보험사 대응
- III 환경변화와 소비자 인식 실태
- IV 환경변화에 대한 보험산업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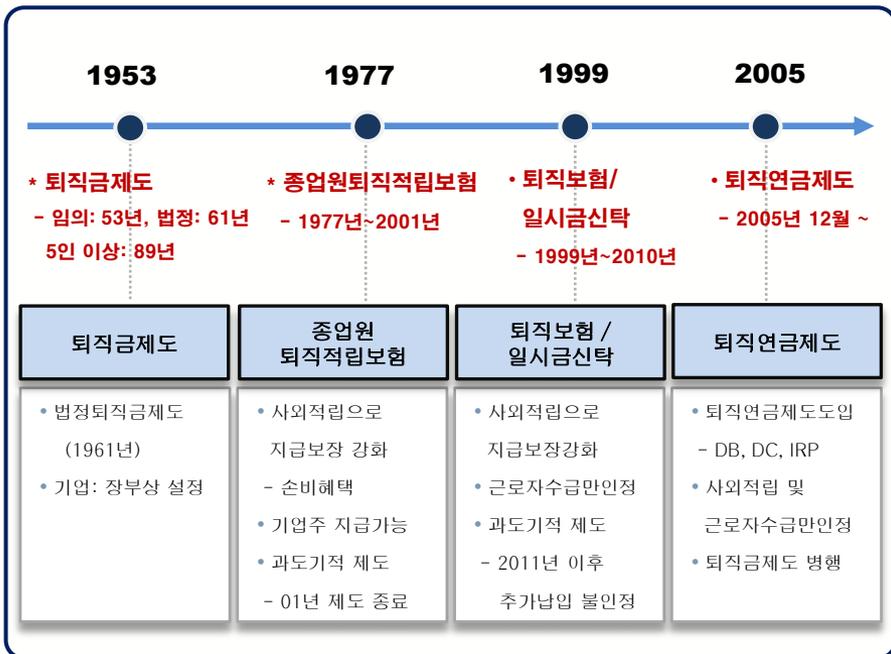
I. 시장현황 및 최근 환경변화

I. 시장현황 및 최근 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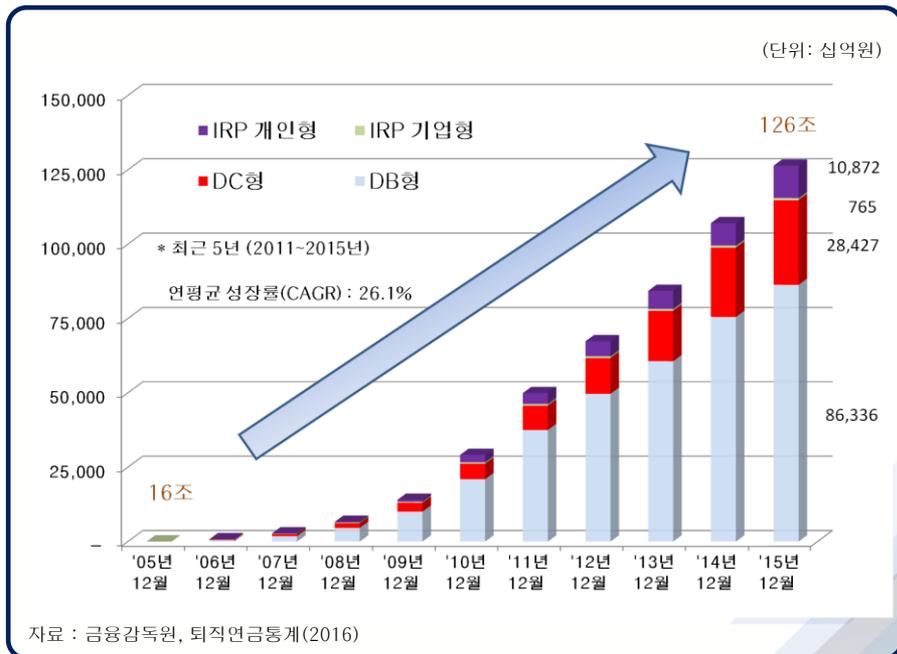
1. 시장현황

- 퇴직연금도입 11년 →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으로 성장
 - 도입 후 성장지속 : 2015년 말 적립금 규모 126조, 최근 5년 연평균성장률 26.1%

퇴직연금제도 도입과정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추이



I. 시장현황 및 최근 환경변화

- 퇴직연금, 고령화 신성장 동력 시장 → 타 금융권 대비 보험사 위상 미흡
 - 보험사 퇴직연금 시장점유율 31.8%에 불과(은행 50.1%) : 제도도입 후 지속적 하락

퇴직보험(신탁) 시장 점유율

(단위: 십억원, %)

업권		2001	2004	
보험권 (퇴직보험)	생명보험	10,479 (78.1)	14,486 (77.5)	85.6%
	손해보험	751 (5.6)	1,517 (8.1)	
타금융권 (퇴직일시금신 탁)	은행	2,176 (16.2)	2,680 (14.3)	14.4%
	투자신탁	19 (0.1)	16 (0.1)	
합계		13,424	18,699	-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시장점유율

(단위: 십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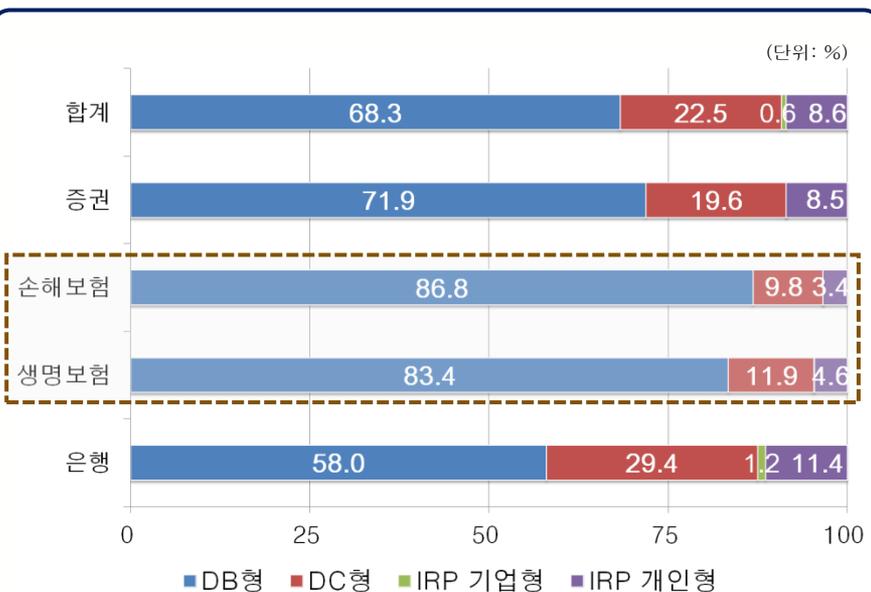
업권		2006	2008	2015	
보험권	생명보험	2,887 (38.1)	22,440 (33.9)	317,296 (25.1)	32%
	손해보험	1,204 (15.9)	4,268 (6.4)	84,327 (6.7)	
타 금융권	은행	2,861 (37.8%)	31,629 (47.8)	633,703 (50.1)	68%
	증권	615 (8.1%)	7,805 (11.8)	220,048 (17.1)	
	근로복지 공단	-	-	8,626 (0.7)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2016)

I. 시장현황 및 최근 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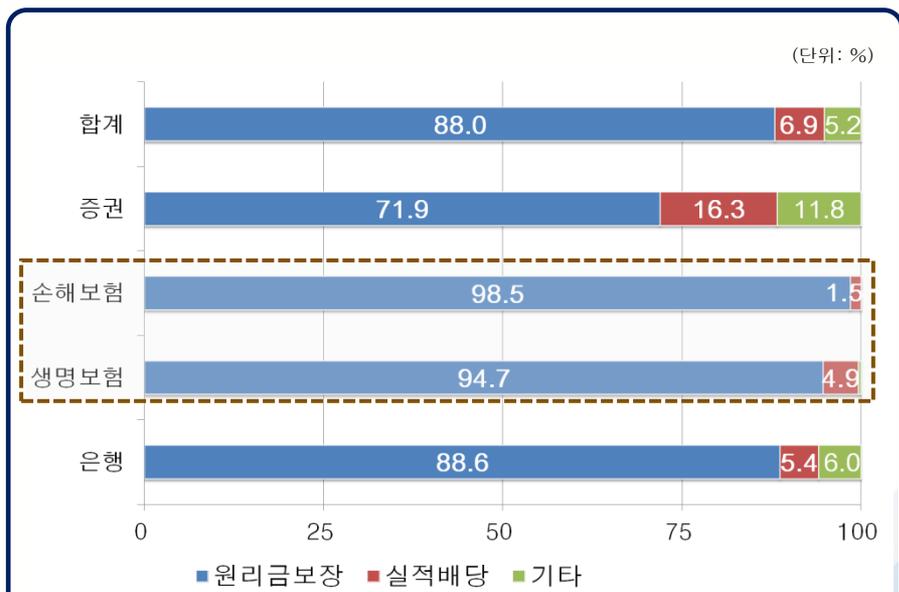
- **보험회사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위주의 제도 운영**
 - 증권사 등 타 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리금보장형 중심으로 운용

금융권역별 퇴직연금 제도운영 형태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2016)

금융권역별 적립금 운용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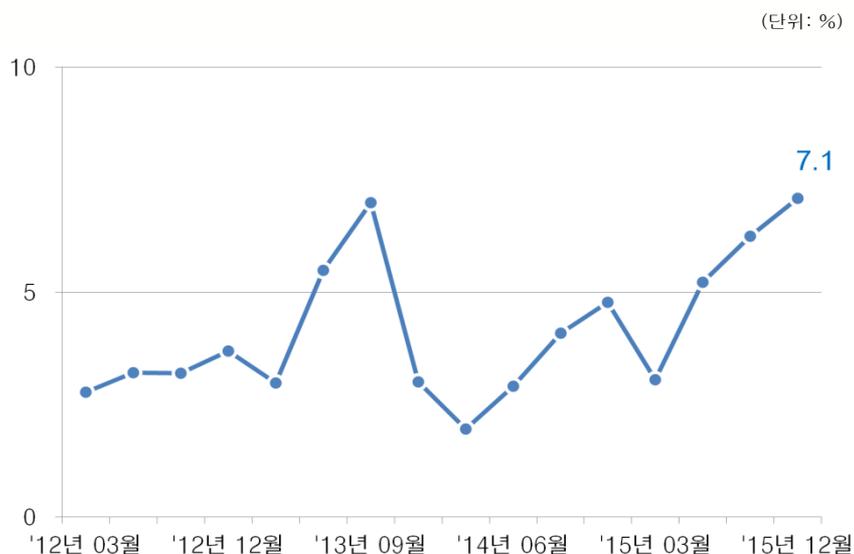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2016)

I. 시장현황 및 최근 환경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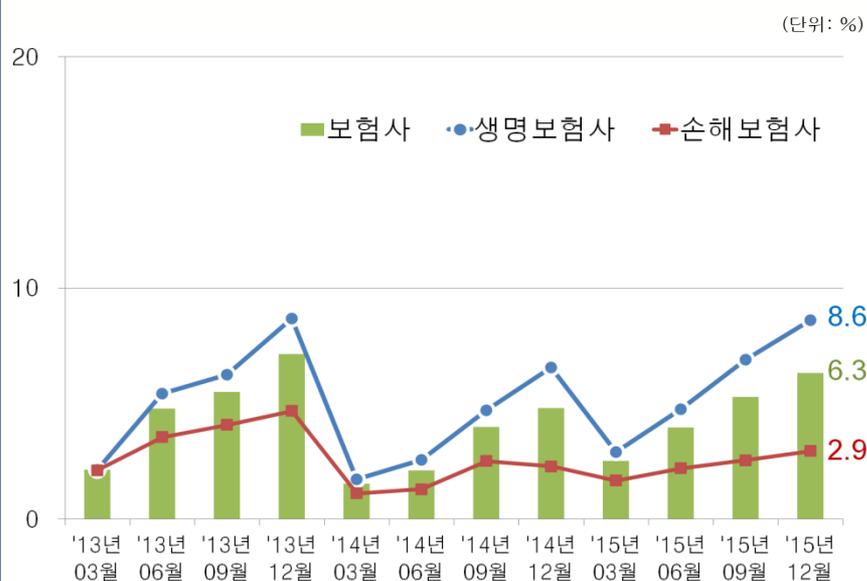
- 생명보험사의 연금지급 8.6%, 손해보험사의 연금지급 2.9%
 - 증권사의 연금지급(14.9%)에 비해 낮은 상황 → 연금전문기관 이미지 제고 절실

퇴직급여 연금수령 추이 [시장전체]



자료 :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2016)

보험사의 연금수급 추이 [수급자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2016)

I. 시장현황 및 최근 환경변화

2. 환경변화

- 저금리 지속 등으로 퇴직연금 운영패턴 변화 전망
 -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회환경 : IRP · 확정기여형 중심으로 시장개편 예상

	경제적 환경	주요 내용	예상 효과
금융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금리기조 지속 ▪ 저성장 구조 고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환경 악화 (투자수익률 저하) ▪ 퇴직금부에 대한 사업주부담 가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기여형으로의 전환 ▪ 원리금보장형상품 수익률 감소 ▪ 연금 재무건전성 취약
사회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장수화 ▪ 임금피크제 도입 가속화 ▪ 성과중심 임금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에 대한 인식 강화 ▪ 확정기여형 도입유인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전환유인 증대 ▪ 확정기여형 및 IRP 기능 증대
회계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연금회계기준 도입 ▪ 퇴직금부 시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 부채 증대 ▪ 기업 당기순이익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퇴직연금(CB형) 도입 예상

I. 시장현황 및 최근 환경변화

- 가입환경 변화는 시장규모 확대와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에 영향
 - 자산운용 규제완화 등 : 투자자산의 다양화와 가입자 운용 선택폭 증대

제도적 환경	주요 내용	예상 효과
가입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 퇴직연금 의무화 ▪ 중기기금제 도입 · 확대 ▪ 1년미만 근로자 가입 확대 ▪ 세액공제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이후 전면 가입 ▪ 30인 이하 사업자 기금형 ▪ 비정규직 퇴직급여화 ▪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시장의 급속한 확대 (Pension Driver 시대) ▪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운용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규제 완화 ▪ 기금형제도 도입 ▪ 계약형 퇴직연금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 대기업으로부터 단계적 기금형 도입 ▪ 투자위원회 및 IPS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산 선택 폭 확대 ▪ 퇴직연금시장 이원화 ▪ 기금형 도입 → 수탁자책임문제 대두
지급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 등 소비자보호 강화 ▪ DB형 사외적립비율 상향 ▪ DC/IRP 예금자보호 ▪ 연금수령 시 세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보호준칙 마련 ▪ 사외적립비율 70% 이상 ▪ 퇴직연금예금자보호 별도신설 (5천만원) ▪ 연금수령 시 30% 세액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적으로 수급권보호 효과 ▪ 연금으로 전환효과 제한적

I. 시장현황 및 최근 환경변화

- 환경변화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외국사례 등을 통한 대응방안 수립 절실
 - 이를 통해 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서 보험회사 역할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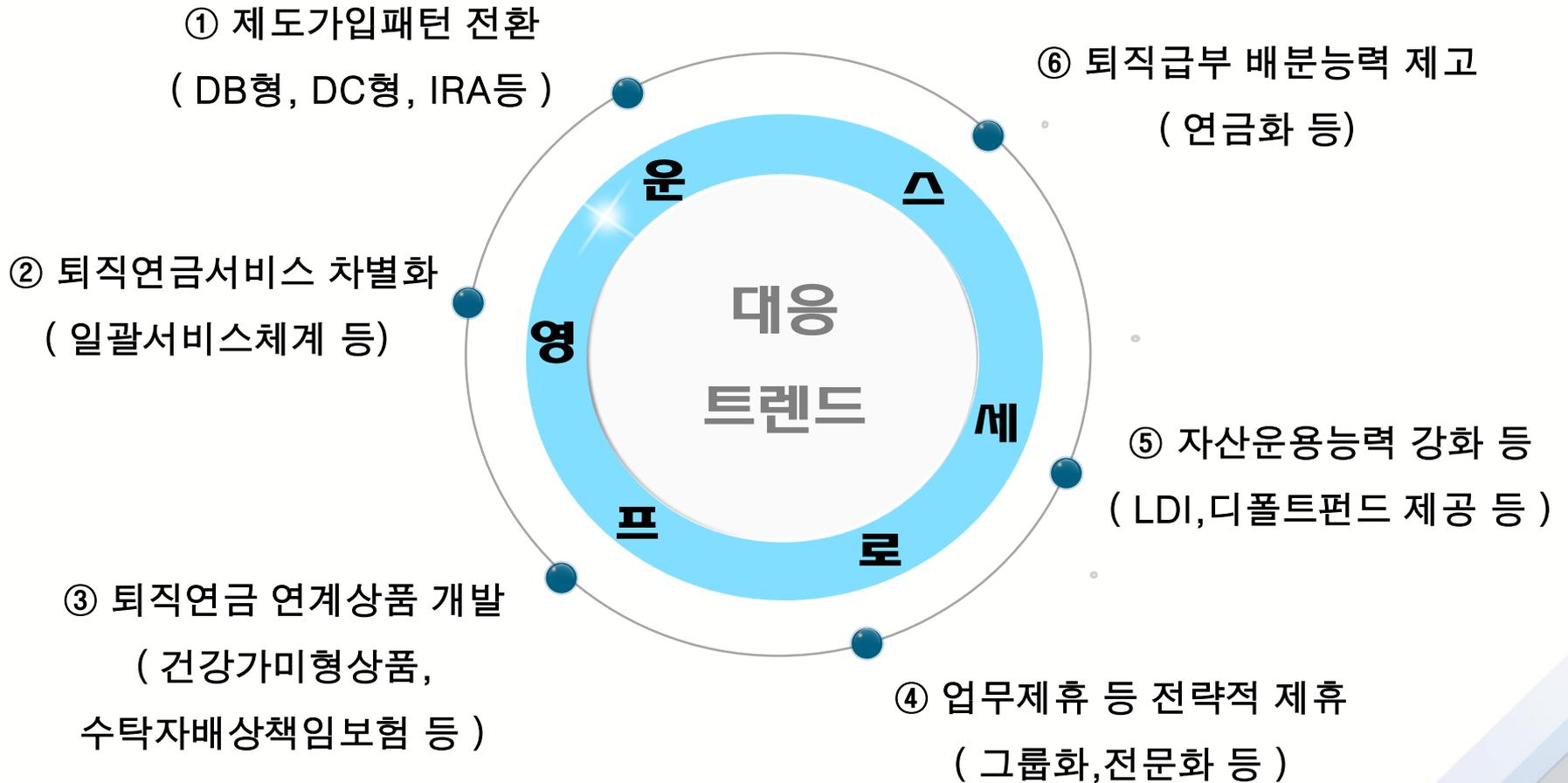




Ⅱ. 환경변화와 해외보험사 대응

II. 환경변화와 해외 보험사 대응

■ 종합 대응 트렌드



II. 환경변화와 해외 보험사 대응

● 제도가입패턴 전환

● DC형 · IRP 유치전략 본격화 [일본생명 : DC형 시장점유율 실질적 1위]

- DB형시장 유지전략 : 캐시밸런스(Cash Balance)형 퇴직연금을 통해 가입 유도

※ CB형 퇴직연금 : DB형과 DC형의 장점이 결합되어 기업 운용리스크 일부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OECD 국가의 퇴직연금 제도 변화

국가	확정기여형 (DC) 비중 변화		확정금부형 (DB)	
	2001년	2011년	2001년	2011년
체코	100%	100%	0%	0%
에스토니아	100%	100%	0%	0%
헝가리	100%	100%	0%	0%
폴란드	100%	100%	0%	0%
슬로바키아	100%	100%	0%	0%
덴마크	89.3%	94.0%	10.7%	8.0%
이탈리아	70.6%	91.4%	29.4%	8.6%
뉴질랜드	70.0%	75.8%	30.0%	24.2%
미국	32.7%	39.4%	67.3%	60.6%
이스라엘	8.9%	23.3%	91.1%	76.7%
포르투갈	3.4%	9.5%	96.6%	90.5%
캐나다	2.5%	3.0%	97.5%	97.0%
멕시코	100%	84.6%	0.0%	15.4%
스페인	97.7%	73.1%	2.3%	26.9%
핀란드	0%	0%	100%	100%
노르웨이	0%	0%	100%	100%
스위스	0%	0%	100%	100%

DC형 단독 운영
(5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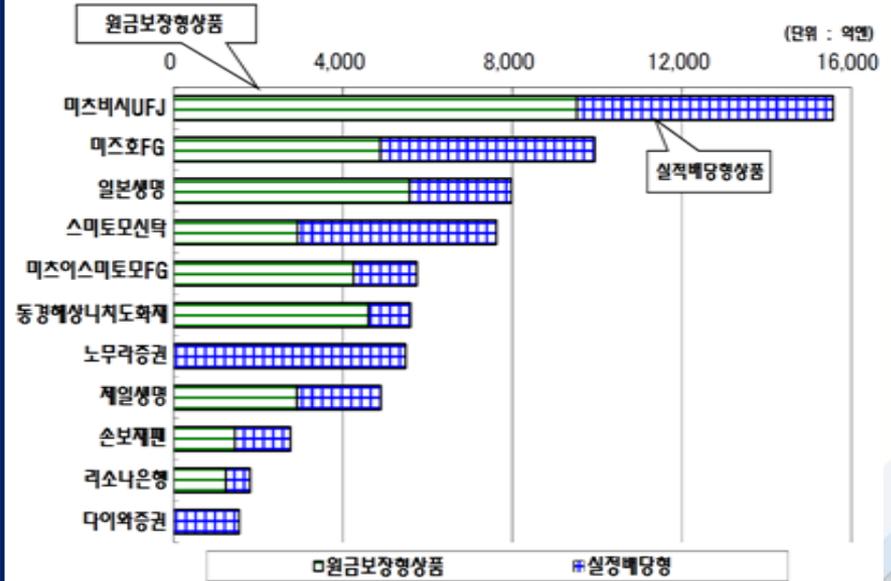
DC형 비중 확대
(7개국)

DB형 비중 확대
(2개국)

DB형 단독 운영
(3개국)

자료 : 厚生労働省(2014), 企業年金制度の現状等について

보험사의 DC형 운용 현황 (일본)



주 : 2014년 3월 말 기준임.

자료 : 年金情報(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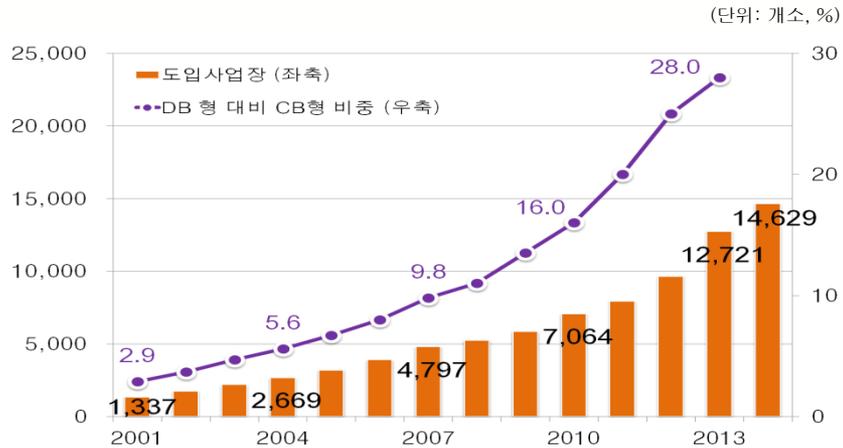
일본의 Cash Balance 형 운용특징 및 리스크부담 형태

구분	특징	리스크 부담
전통적 DB	급여비례 및 포인트제 등 급부산정 방법이 사전에 결정	운용실적이 예정이율을 하회하는 리스크를 사업주가 모두 부담
지표연동형 CB	일정한 각출액을 기초로 국채 등 지표에 연동하여 급부액 결정	운용실적 < 운용지표 : 사업주, 운용지표 < 예정이율 : 가입자
실적배당형 CB	일정 각출액을 기초로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급부액 결정	운용실적 < 원리금 : 사업주, 운용실적 < 예정이율 : 가입자
전통적 DC	사전에 결정된 각출액과 운용수익과의 합산액을 기초로 급부액 결정	운용에 따른 리스크를 가입자가 모두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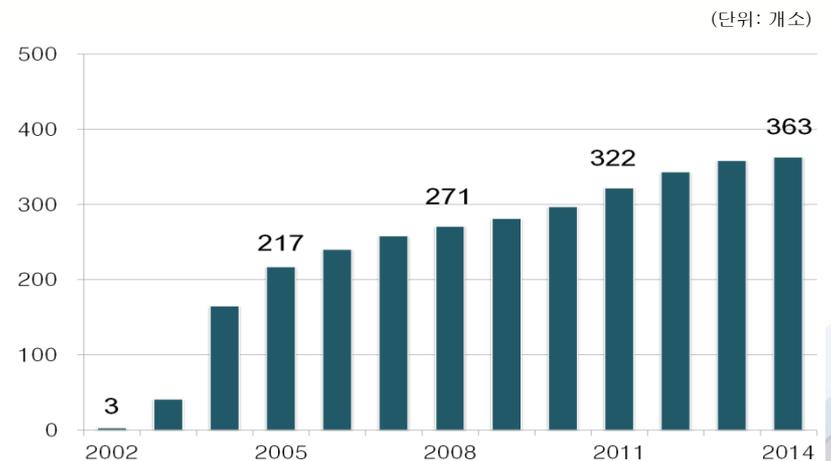
자료 : 연금정보(2014)

미국의 CB형 퇴직연금 시장 현황



자료 : Kravitz(2016)

일본의 CB형 도입사업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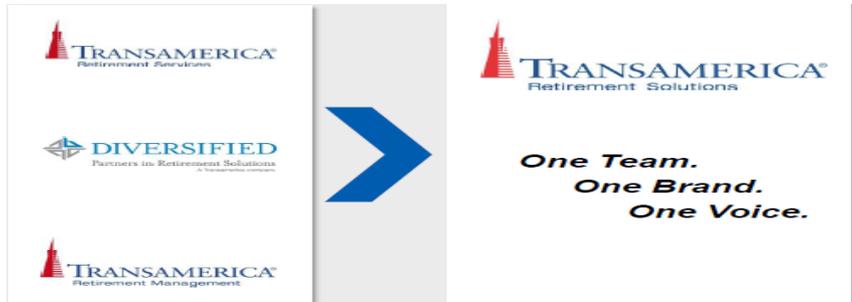
자료 : 企業年金連合会(2015)

II. 환경변화와 해외 보험사 대응

● 번들형 중심 가입서비스 차별화

- 중소기업 중심 번들형서비스 체계 강화 : 중소기업 대상 틈새시장 개척 노력
 - DB형: 사내복지니즈를 반영한 주문제작, DC형: 제도설계, 가입자교육 등 일괄서비스

Aegon의 일괄서비스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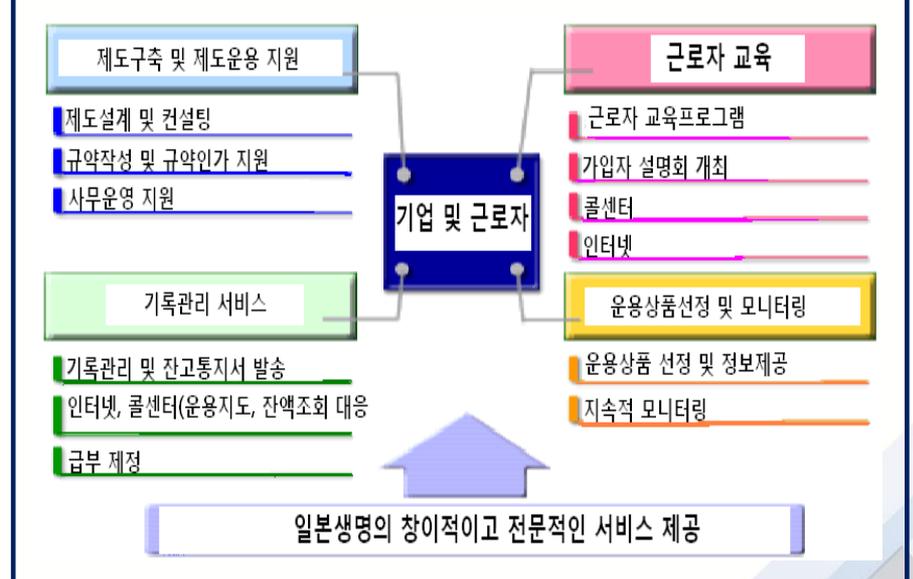


통합서비스 (Bundled Services)

정의	기록관리, 제도운영, 투자서비스 : 단일기관
장점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접근 편리성
특징	낮은 수수료
대표 사례	Fidelity, Sompo Japan DC Securities

자료: StanCorp Financial Group(2013)

일본생명의 일괄서비스 체계



자료: 일본생명 홈페이지

II. 환경변화와 해외 보험사 대응

● 퇴직연금 연계상품 개발

- **AIG, 손보재팬** : 기금형 퇴직연금과 연계한 수탁자배상책임보험 개발
- **아이오이손해보험** : DC형 퇴직연금 연계 상해보험상품 제공 [적립형 상해보험]

※ 수탁자배상책임보험 : 수탁자 책임위반으로 소송이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금 등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

기금형 퇴직연금 연계상품 (미국)

가입 대상

- 지명수탁자, 신탁수탁자, 투자매니저

담보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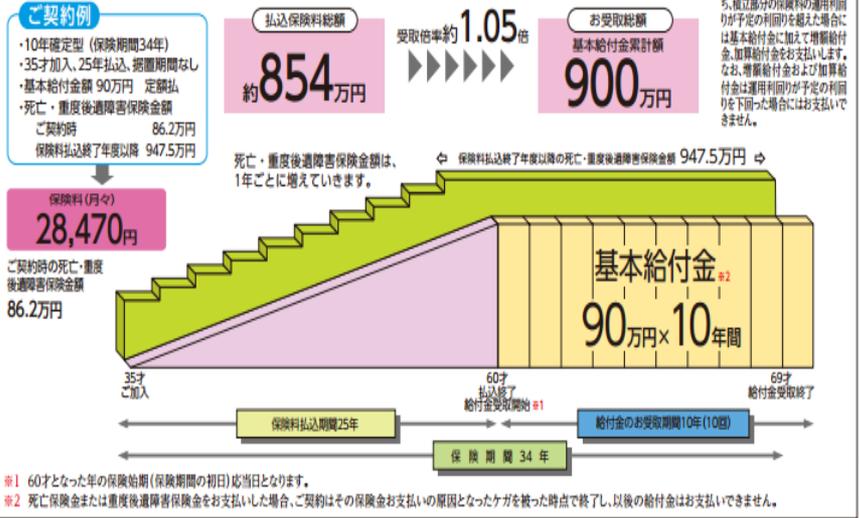
- 수탁자 의무위반 : 경영상 오류, 태만, 사무착오 및 누락

보장 한도

- 보험계약금액

DC형 적립상해보험 (일본)

★모델ケース(60才給付金お受取開始プラン)



자료 : 아이오이손해보험

II. 환경변화와 해외 보험사 대응

● 업무제휴 등 전략적 제휴

- 상품 및 업무제휴를 통한 운용시너지 제고 : 그룹내 관계회사간, 타금융회사간 등
 - DC 공동사업자 : 11개 금융기관이 DC형 퇴직연금에 관한 정보공유, 공동서비스 제공

운용관리기관 업무제휴 실태 (일본)

(단위: 개소, 천명)

운용관리회사	제휴기관	가입기업 수	가입자 수
동경해상	82은행 등	1,536	105
손보재팬 DC증권	제일생명	157	24
아이오이닛세이손보	노무라증권	643	18
제일생명	손보재팬 DC증권	117	18
일본생명	교토은행 등	160	12
미츠이스미토모화재	JPN	135	10
부국생명	미즈호은행	5	5
일본흥아손보	-	79	4

자료 : 年金情報(2014)

퇴직연금 수탁관리 운영시스템

Defined Contribution Provider Group



Memberships
The DCPG has 5.7 million membershi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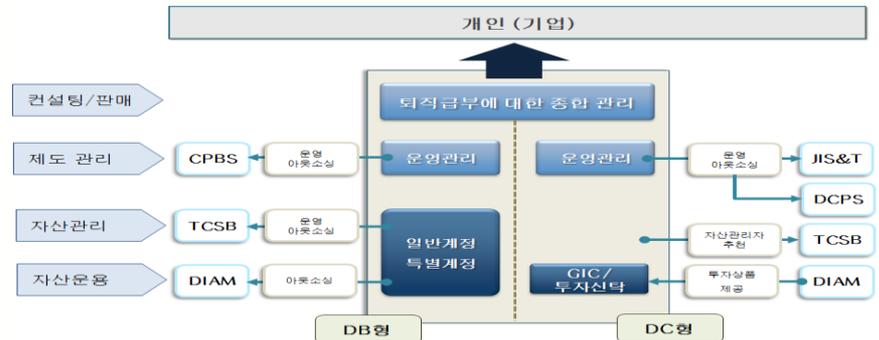
Schemes
It has 157,000 schemes*



Assets
There is £95bn of assets in DCPG schemes



자료: Spence Johnson(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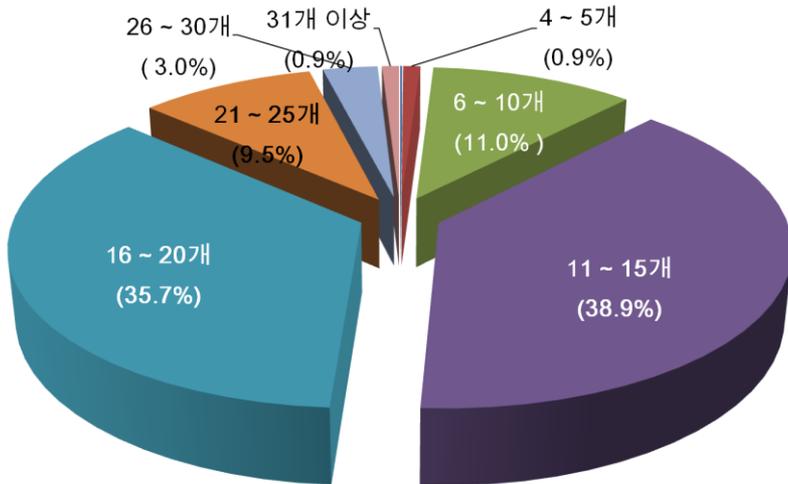
자료 : 제일생명

II. 환경변화와 해외 보험사 대응

● 리스크 중심 자산운용

- 실적배당형 등 운용상품 다양화
- 부채변동성을 고려한 자산배분전략 추진 → 연금 ALM적 리스크관리체계로 전환

메이지야스다 생명의 운용상품 구성



자료 : 明治安田生明

부채중심 자산배분 (LDI 전략)

구분	전통적 운용	부채중심 자산배분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운용 고수익 • 전기간 자산이 부채 상회 • 비용최소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를 중심으로 한 투자 • 적립잉여, 적립부족 통제
리스크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수익률을 해당 부문의 지수 또는 S&P500 등 대표지수와 연계 • 자산의 변동성만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지수와 연계하지 않고 연금계리사가 평가한 연금펀드의 부채와 연계 • 펀딩비율의 변동성을 고려
무위험 전략	전략적 자산배분	부채 중심의 자산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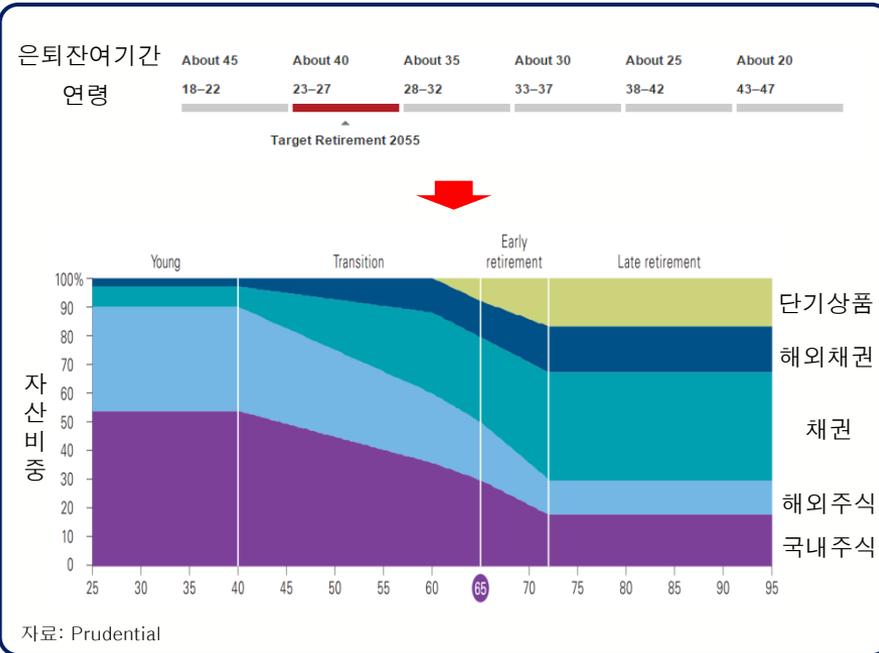
II. 환경변화와 해외 보험사 대응

● 라이프사이클펀드(생애주기별 포트폴리오 자동조정) 등 자금운용 다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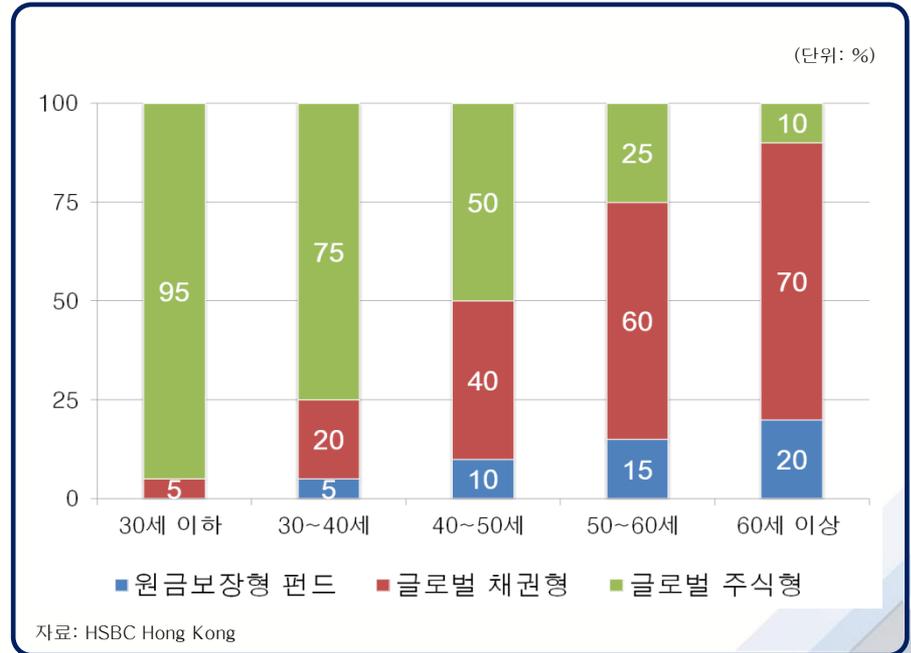
- 푸르덴셜 : IncomeFlex Target 등

※ 디폴트옵션 상품 : 특별한 투자지시가 없을 때 자동으로 운용되는 상품

라이프사이클펀드 운영



디폴트펀드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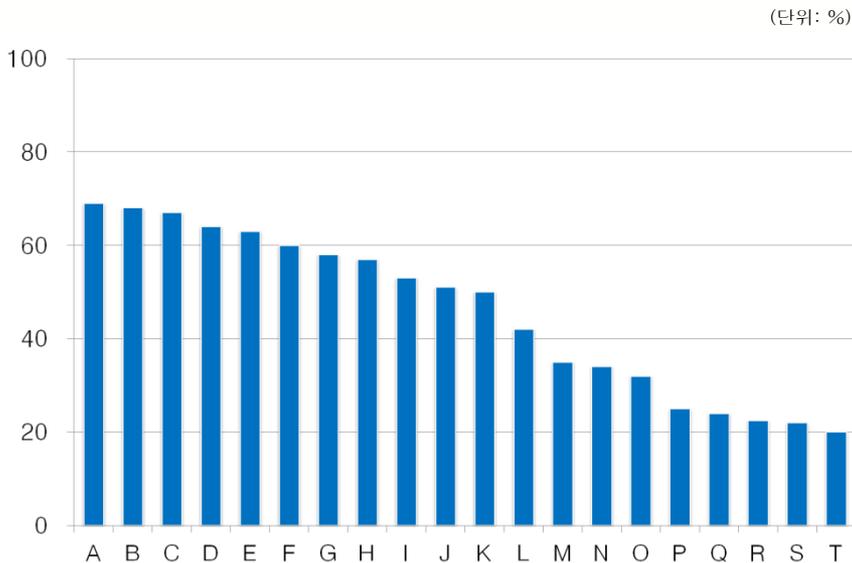


II. 환경변화와 해외 보험사 대응

● 퇴직금부 배분능력 제고

- 연금개발능력 등 보험회사 강점 활용 → 배분단계에서 보험회사 역할제고
 - 체감형, 체증형 등 연금지급형태 다양화, 맞춤형 연금상품 제공

지급단계에서의 사업자별 고객유지율



자료: Financial Conduct Authority(2014)

지급단계에서의 상품공급

운용 상품

- Enhanced Annuities
- Short or Fixed term Annuities
- Phased Annuity
- Investment-backed Annuities
- Income Drawdown

상품 개발

- Advanced Life Deferred Annuities
- Extreme-Inflation Protection
- LTA 12-month Cooling-off Period
- Switchable Annuities

자료: Vicary-Smith(2014)

II. 환경변화와 해외 보험사 대응

■ 종합평가





Ⅲ. 환경변화와 가입자 인식실태

Ⅲ. 환경변화와 가입자 인식 실태

* 가입자(기업 및 근로자) 인식 관련 설문조사

- 퇴직연금 환경에 대한 가입자 인식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 가입단계환경, 운용단계환경, 배분(지급)단계 관련 환경인식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구분	대상	특징
가입자	가입기업 220기업 (법정퇴직금가입 30개 기업 포함)	보험연구원, Now & Future
	DC형, IRP 가입근로자 6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	척도방식 및 혼합형 병행
조사기간	2015.7 ~ 2015.8	-

설문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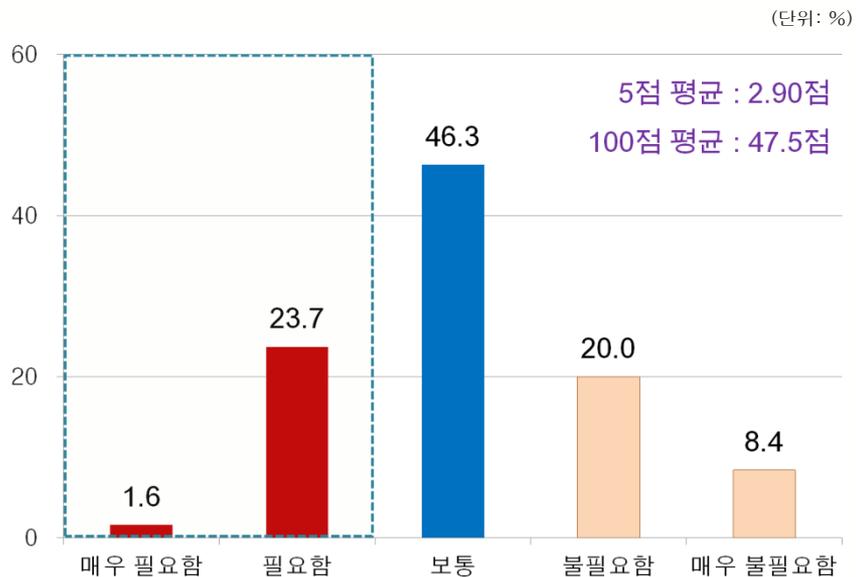
구분	설문조사 내용
가입단계 환경인식	- 퇴직연금제도 전환 의향 - CB형 및 번들형서비스 선호도 - 중소기업기금제, 기금형제도 도입의향 - 적립형 IRP 가입의향 등
운용단계 환경인식	- 위험자산투자 의향 - 퇴직연금연계상품 선호도 - 전략적제휴 및 연금전문회사 선호도 등
배분 단계 환경인식	- 세금감면 시 연금수령 선호도 - 퇴직급여 수령방식 등

Ⅲ. 환경변화와 가입자 인식 실태

1. 가입단계 환경인식 : [1] 퇴직연금 전환의향 및 시장증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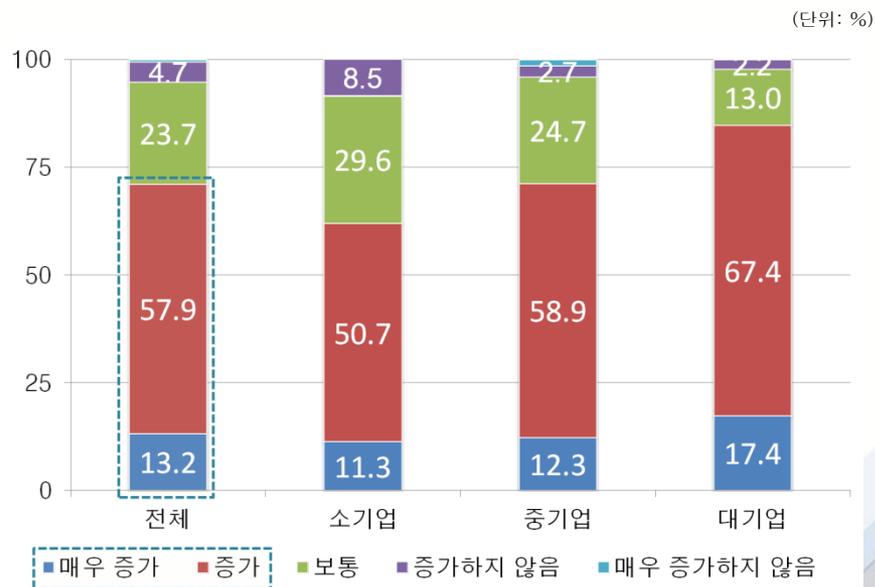
- 저금리 기조 등 : 단기적으로 DC형 중심 전환은 제한적 예상
 - 퇴직연금 단계별의무화 등으로 시장규모 확대 전망 (단, 소기업은 낮게 예상)

저금리 시 DC형으로 전환 필요성



자료 : 보험연구원(2016)

단계별의무화 등에 따른 시장증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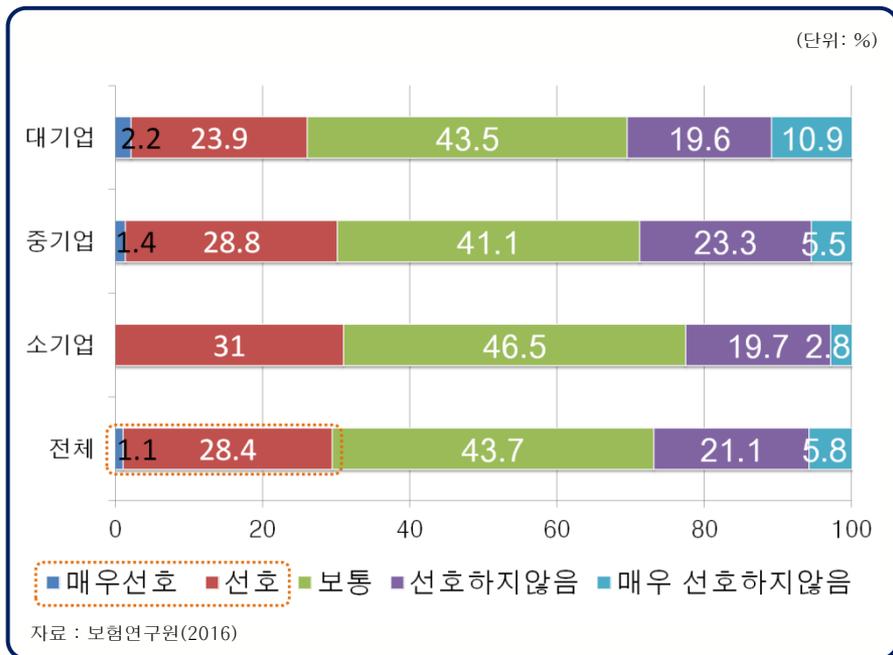
자료 : 보험연구원(2016)

Ⅲ. 환경변화와 가입자 인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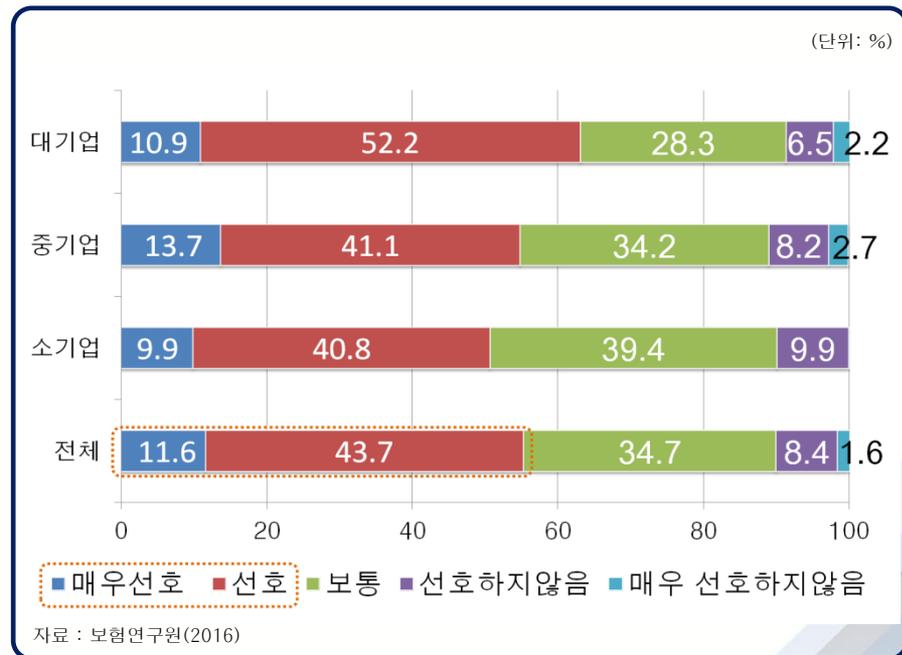
1. 가입단계 환경인식 : [2] CB형 및 번들형서비스 선호도

- DB형과 DC형을 결합한 CB형 선호 : 약 30% 수준
 - 번들형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캐시밸런스(CB)형 퇴직연금 선호도



번들형 서비스체계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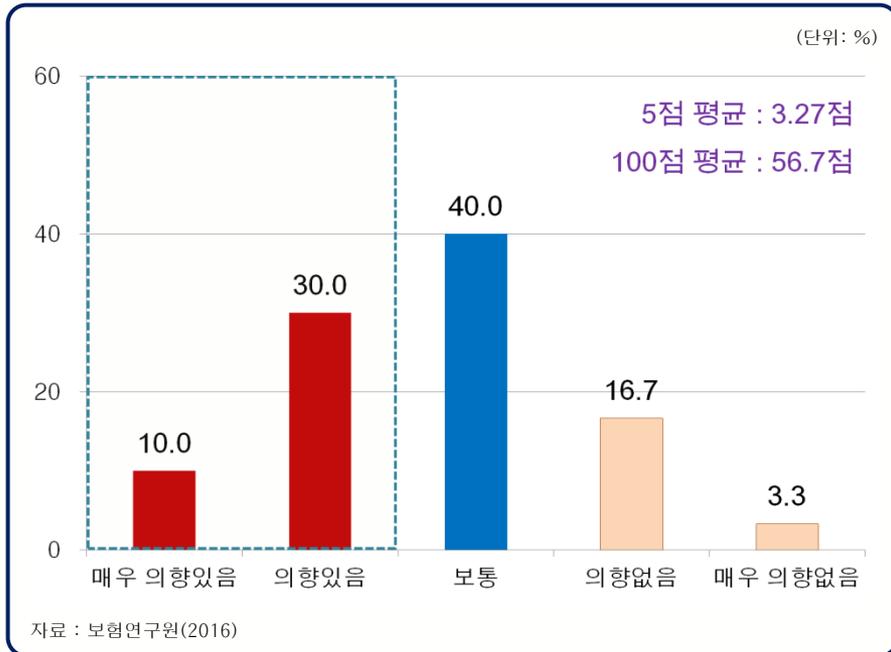


Ⅲ. 환경변화와 가입자 인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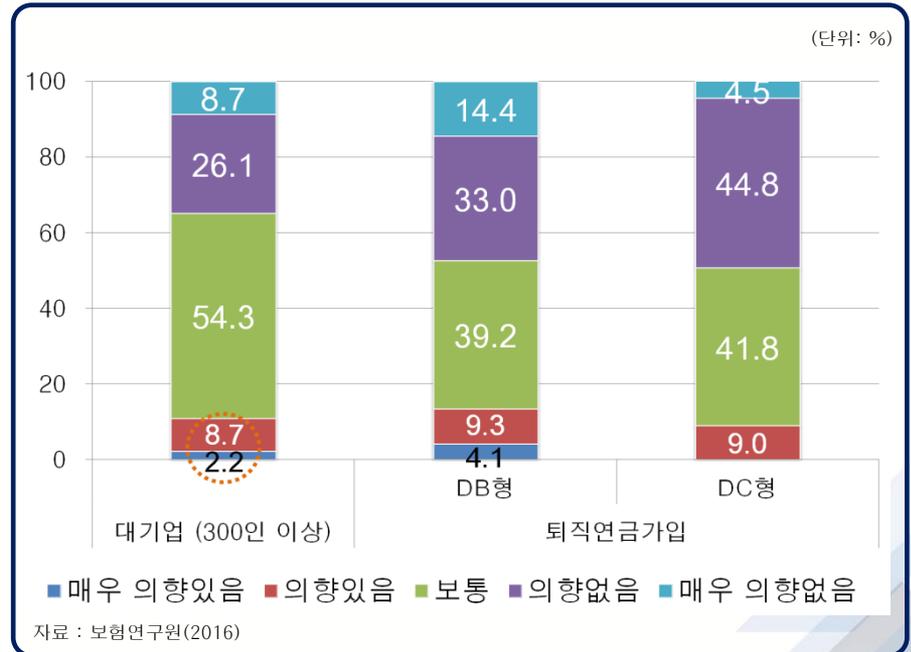
1. 가입단계 환경인식 : [3] 중소기업기금제, 기금형제도 도입 의향

- 중소기업기금제 도입으로 영세사업장 가입 활성화 예상
 - 반면,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의향은 매우 낮은 수준 : 대기업 10.9% 불과

중소기업기금제 가입의향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의향



Ⅲ. 환경변화와 가입자 인식 실태

1. 가입단계 환경인식 : [4] 적립형 IRP 가입의향

- 세액공제 확대로 적립형 IRP 확대 예상 : 28.5%는 기가입 [저소득층: 17%]
 - 현재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33.8%는 가입의향 존재 → 세제혜택니즈 영향

적립형 IRP 가입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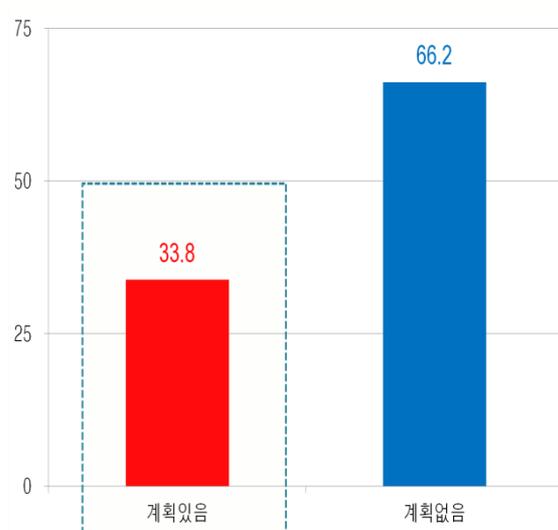
(단위: %)

구분	가입	미가입
전체	28.5	71.5
연령대	20대	74.0
	30대	70.1
	40대	69.8
	50대	73.3
월평균 소득	하	82.9
	중	73.6
	상	64.0

자료 : 보험연구원(2016)

적립형 IRP 가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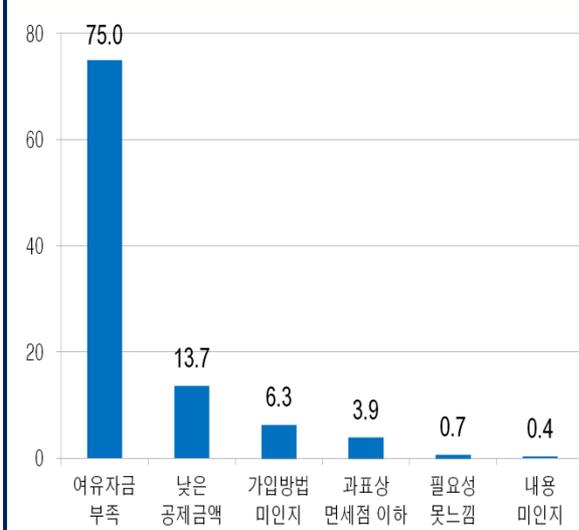
(단위: %)



자료 : 보험연구원(2016)

적립형 IRP 미가입 사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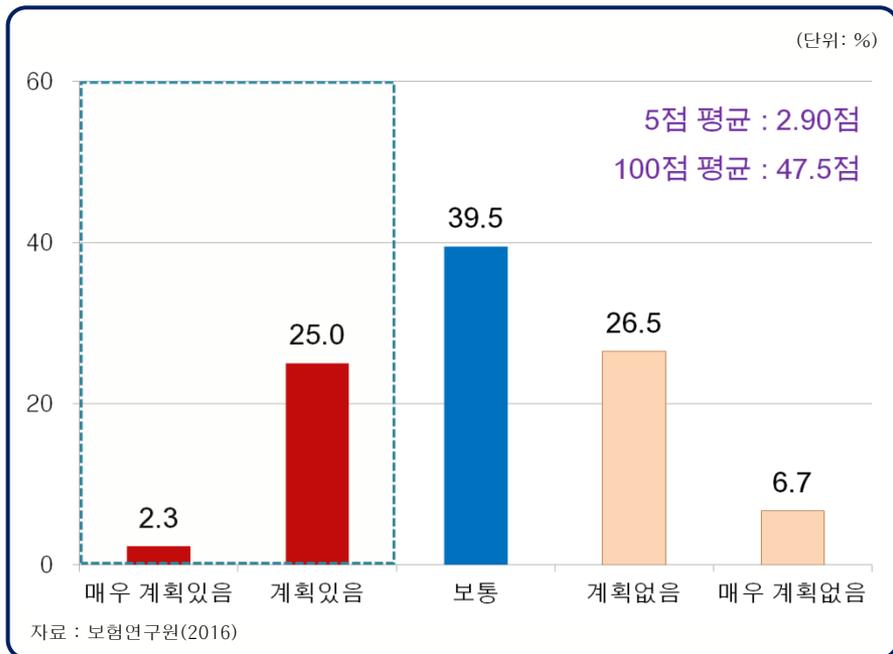
자료 : 보험연구원(2016)

Ⅲ. 환경변화와 가입자 인식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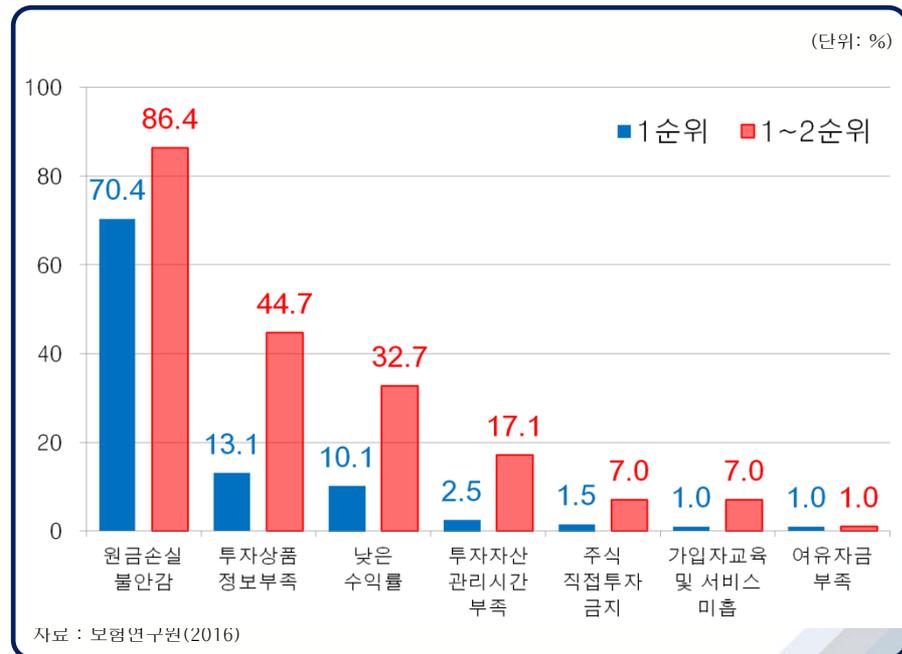
2. 운용단계 환경인식 : [1] 위험자산 투자 의향

- DC형 적립금 투자규제 완화에 따른 위험자산 투자의향 : 27.3%에 불과
- 원금손실에 대한 불안감, 투자상품 정보부족 등으로 위험자산 투자 소극적

위험자산 투자확대 계획



투자확대계획이 없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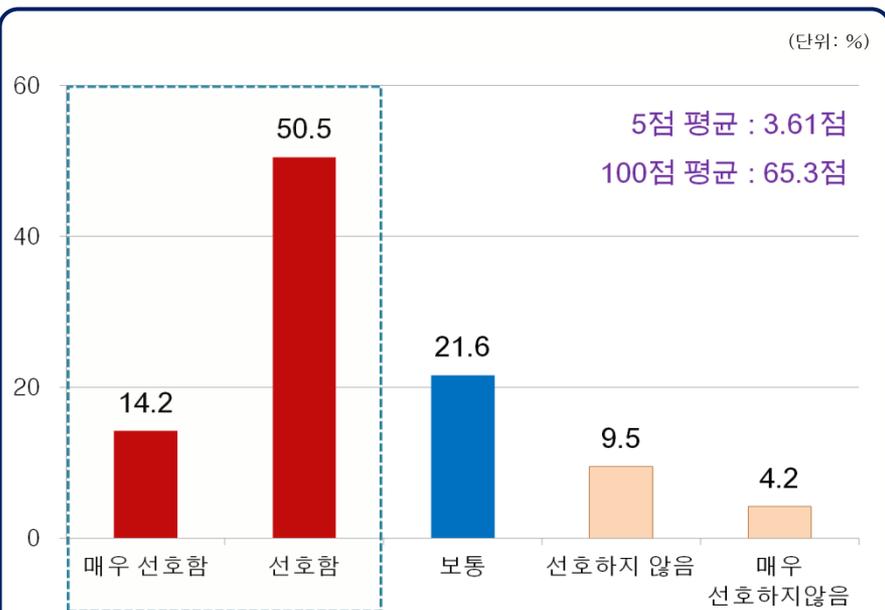
Ⅲ. 환경변화와 가입자 인식 실태

2. 운용단계 환경인식 : [2] 퇴직연금 연계상품 선호도

- 규제완화의 보완형 상품인 기금형제도 연계상품 선호도는 매우 높은 수준
- DC형 퇴직연금 연계상품(건강보험가미형상품)에 대한 선호도는 58%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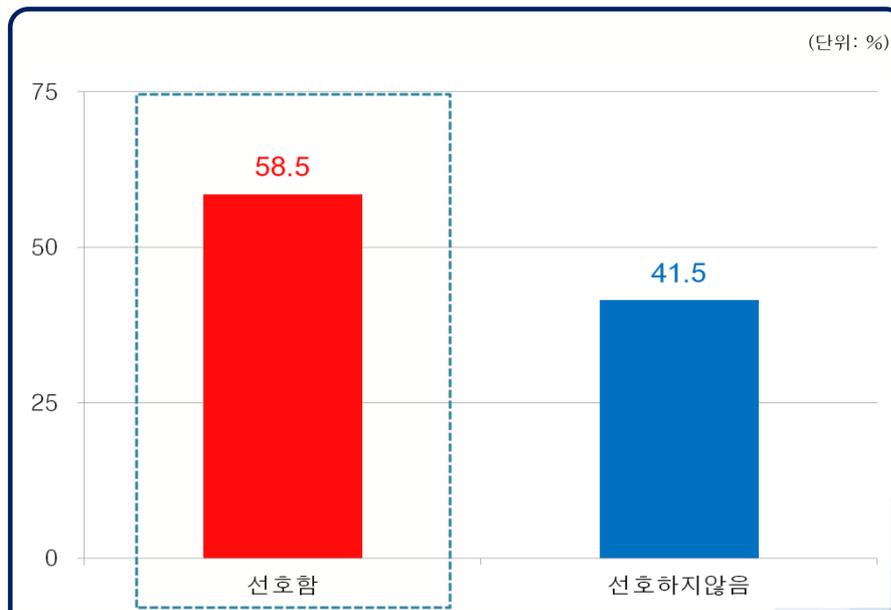
※ 건강 보장 가미형 상품 :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보장성 기능을 추가한 상품

기금형퇴직연금 연계상품 선호도



자료 : 보험연구원(2016)

DC형 퇴직연금 연계상품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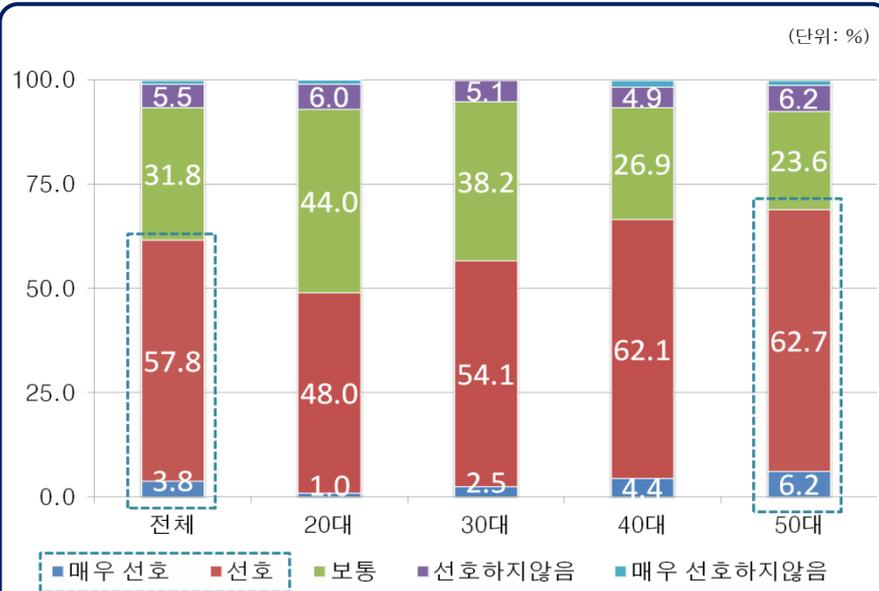
자료 : 보험연구원(2016)

Ⅲ. 환경변화와 가입자 인식 실태

2. 운용단계 환경인식 : [3] 전략적 제휴 등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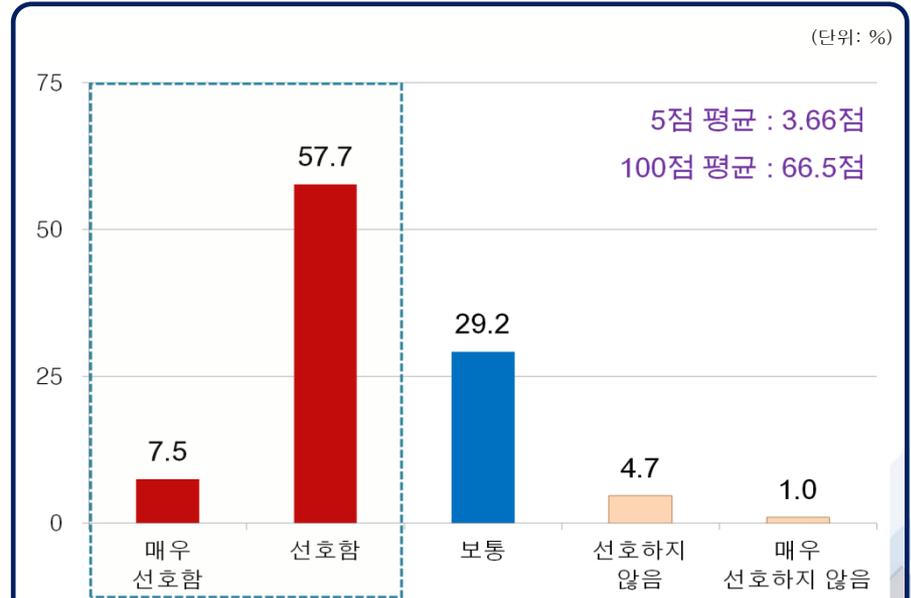
- 전략적 제휴, 연금전문회사 등에 대한 선호도 고려 시 연금운용전문화 절실
 - 특히, 안정적 운용을 지향하는 고연령층일수록 업무제휴에 대한 높은 선호 경향

업무 등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선호도



자료 : 보험연구원(2016)

연금전문회사에 대한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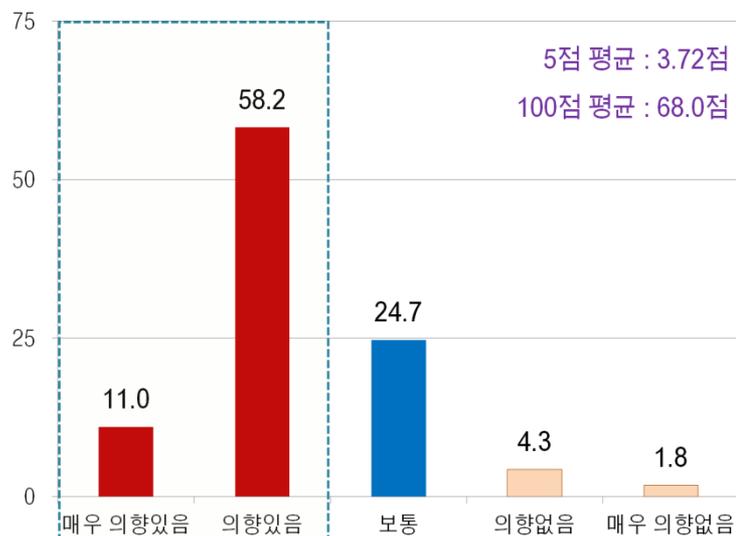
자료 : 보험연구원(2016)

Ⅲ. 환경변화와 가입자 인식 실태

3. 지급단계 환경인식 : [1] 세금감면 시 연금수령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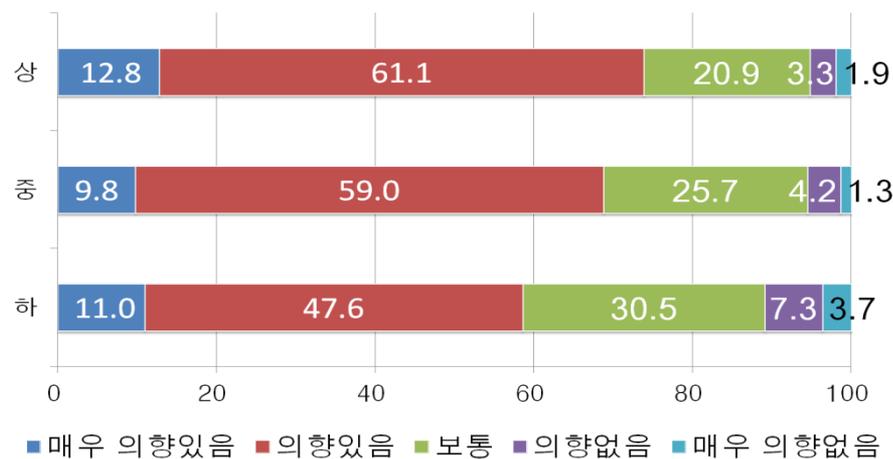
-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 부여 시 연금수령 의향 증대 뚜렷
 - 이는 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중요한 전제조건은 연금세제혜택임을 반증

연금수령에 대한 세금감면(30%) 시 연금수령 선호도



자료 : 보험연구원(2016)

소득계층별 선호도



Ⅲ. 환경변화와 가입자 인식 실태

3. 지급단계 환경인식 : [2] 퇴직급여 수령방식 선호도

- 근로자의 87%는 퇴직급부 지급방식으로 연금수령을 보다 선호
 - 정기연금보다 종신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며, 정기연금은 은행 선호 경향

퇴직급여 수령방식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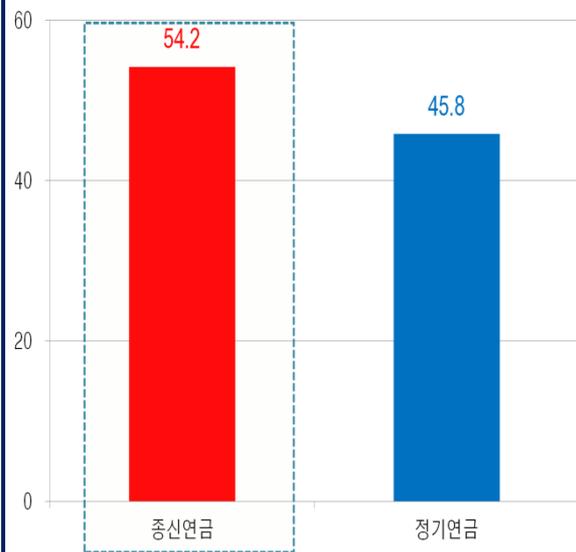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일시금	연금	일부연금
전체	13.0	58.5	28.5
연령	20대	48.0	37.0
	30대	60.5	26.1
	40대	9.9	61.0
	50대	14.9	60.2
소득	하	52.4	32.9
	중	13.4	56.4
	상	11.8	64.0

자료 : 보험연구원(2016)

연금형태별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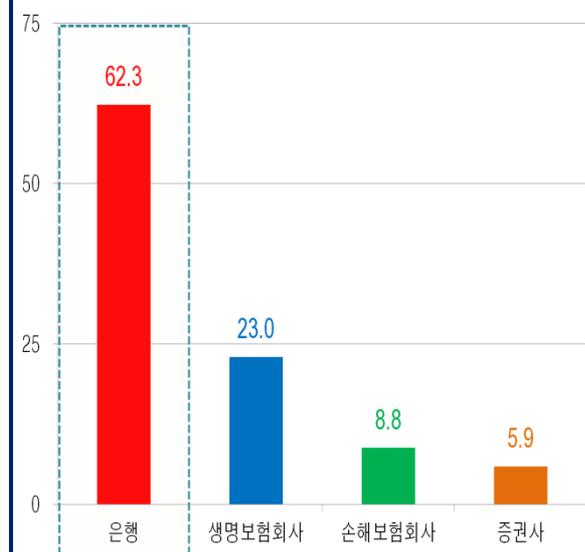
(단위: %)



자료 : 보험연구원(2016)

정기연금 선호기관

(단위: %)



자료 : 보험연구원(2016)

Ⅲ. 환경변화와 가입자인식 실태

■ 종합 평가

가입단계 환경인식

- 저금리 기조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패턴 변화는 제한적 예상
 - 퇴직연금 단계별의무화 등은 시장규모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
- 기금형 도입 의향은 낮은 반면 중소기업기금제 도입 의향은 높은 수준
 - CB형 퇴직연금 및 번들형 서비스에 대한 높은 선호도 등을 반영한 대책 시급

운영단계 환경인식

- 원금손실 불안감, 투자정보 부족 등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의향은 소극적
 - 퇴직연금과 연계된 운용상품 등에 대한 선호도는 대체로 높은 수준
- 타 금융권과의 업무 및 상품 등 전략적 제휴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배분단계 환경인식

- 연금으로 수령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시 연금으로 전환 활성화 예상
 - 퇴직급부 연금수령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 연금수령 선호도 증가 현상 뚜렷
- 높은 연금선호도가 실제구매로 이어지도록 지급(배분)단계의 차별화 대책 절실
 - 높은 종신연금 선호도 등을 고려한 연금화 대책 마련



IV. 환경변화에 대한 보험산업 대응

IV. 환경변화에 대한 보험산업 대응

Vision

가입자 친화적 환경변화 대응으로 노후보장적 역할 제고

대응

[SWOT분석결과]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중심의 영업력 강화
개인형 및 확정기여형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퇴직연금 연계상품의 다양화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 강화
퇴직금부 배분능력의 향상

대상

연금가입단계

연금운용단계

적립금배분단계

IV. 환경변화에 대한 보험산업 대응

■ 중소기업 중심의 영업력 강화

- 중소기업의 규모 및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시장진출 필요
 - 또한 맞춤형 일괄서비스 체계 제공으로 서비스 차별화 등이 요구

현행

- ◆ 대기업 사업장 : 대부분 퇴직연금가입 상태
 - 300인 이상 기업 퇴직연금도입률 84.4%
 - ※ 300인 이하 기업 도입률 17.3% (도입사업장수: 303,213개소)
- ◆ 활성화 대책으로 중소기업시장 확대 예상
- ◆ 미일보험사: 중소기업위주 서비스 차별화
 - 중소기업 목표시장 선정(미국 메트라이프 등)
- ◆ 영세사업장 : 서비스 중시 사업자 선정 경향

대응

- ◆ 기업규모 및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시장진출
 - 30~300인 이하 : 법인영업 중심 마케팅
 - 30인 이하 소기업 : 개인영업과 병행 마케팅
- ◆ 번들형 일괄서비스제공으로 서비스 차별화
 - 제도가입부터 자산관리까지 일괄서비스
- ◆ 제도 선호 유형별 서비스 체계 구축
 - DB형, DC형, DB형+DC형 등

IV. 환경변화에 대한 보험산업 대응

■ 확정기여형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 퇴직연금 영업력 제고를 통해 DC형 적극 유치 (CB형에 의한 DC전환 최소화)
 - 이를 위해 개인연금과 법인영업 간 연계도모, 중소기업기금제도에 설계사 활용 등 긴요

현행

- ◆ DB형 운영에 대한 기업부담 가중 전망
 - 저금리 및 저성장 장기화 등 영향
- ◆ DC형 중심의 환경변화 지속
 - 적립금 운용규제 완화, 임금피크제 도입 등
- ◆ 보험사, 확정기여형 편중운용
 - 보험사 금리리스크 부담 증대
- ◆ CB형 퇴직연금 적극 활용(미·일 등) 참조
 - 미국 : DB 중 28%, 일본 : DB 중 52%

대응

DB형 유지

- ◆ DB형과 DC형을 연계한 CB형 활용
 - DB형 가입기업의 운용리스크 감소
 - DC형으로의 전환최소화

IRP / DC형 유치

- ◆ 자영자, 이직자 등의 IRP가입 유도
- ◆ DC형 퇴직연금의 영업력 강화
 - 개인영업과 법인영업 간 연계 도모
 - 중소기업기금제도에 설계사 활용

IV. 환경변화에 대한 보험산업 대응

■ 퇴직연금 연계상품의 다양화

- 퇴직연금에 건강보장기능을 가미한 상품, 기금형 연계 보험상품 개발 필요
 - 특히, 기금형 제도 도입 대비 : 수탁자배상책임보험 개발 등으로 상품경쟁력 제고

현행

- ◆ 가입자: 높은 퇴직연금 연계 상품 선호도
 - 건강보장가미형 58.5%
- ◆ 현재 일부 보험사 : 단순 상품결합방식 검토
 - 퇴직연금 연계상품 개발 미흡
- ◆ 수탁자배상책임보험 개발 검토 미흡
 - 향후 기금형 제도 도입 시 대비 등
- ◆ 설문조사 결과, 60% 이상 기업이 개발선호

대응

- ◆ 퇴직연금에 건강보장기능을 가미한 상품제공
 -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건강보장상품 등
 - 원리금보장상품에 가미한 건강보장상품 등
- ◆ 기금형과 연계된 수탁자 배상책임보험 개발
 - 손보재팬, 아이오이 손해보험, AIG, Chubb 등
 - * 근퇴법 시행령에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IV. 환경변화에 대한 보험산업 대응

■ 퇴직연금 운용의 전문성 강화

- 그룹 내 관계금융사 간, 타금융기관(은행 등) 간 업무 및 상품 제휴 필요
 - 저금리 환경 고려 : 실적배당형 중심 운용 (DB형은 부채중심 자산운용)으로 전환

현행

- ◆ 보험회사 단일의 사업모델 견지
 - 연금운용의 시너지 효과 저조
- ◆ 가입자 : 제휴기관 등에 대한 선호도증대
 - 가입근로자 중 61.6% 선호
 - DC형 연금전문기관 선호 65.2%
- ◆ 원리금 보장형 중심의 자산운용
 - 저금리 환경에서 금리리스크 부담증대

대응

- | | |
|---|------|
| ◆ 그룹 내 관계금융사 간 연계 강화 | 대형사 |
| ◆ 타 금융기관 간 업무 및 상품제휴 | 전체 |
| ◆ DC형 연금전문기관 운용(컨소시엄) | 중소형사 |
| ◆ 실적배당형 중심 자산운용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한 규제완화의 보완형 상품 제공 | 전체 |

IV. 환경변화에 대한 보험산업 대응

■ 퇴직금부 배분능력 향상

- 연금지급을 중심으로 한 배분시장[인출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 국민연금과 연계된 퇴직금부 설계, 소비자 행태를 고려한 옵션 다양화 등이 필요

현행

급부지급
형태인식

- ◆ 일시금 선호 13.0%에 불과
 - 연금 58.5%, 부분연금 28.5% 선호
 - 종신연금(54.2%) > 정기연금(45.8%)

연금지급
기관인식

- ◆ 정기연금지급 : 은행 62.3% 선호
 - 생보사 23.0%, 손보사 8.8% 불과

연금화
유도대책

- ◆ 연금수령 시 세제혜택 강화
 - 세금감면 30% 등

대응

- ◆ 국민연금과 연계된 퇴직금부 설계 차별화
 - 국민연금 지급시기 감안(정기 및 종신연금)
- ◆ 소비자행태 등을 고려한 옵션 다양화
 - 소비자의 재무행위 변화를 반영
 - 예: 소득인출형, Stop & Go 형 등
- ◆ 고연령 연금 개발 등으로 연금가입 유도

감사합니다



개인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산업 대응

- 정년연장을 중심으로

2016. 6. 28

강성호





Contents

- I 개인연금 시장환경 변화
- II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 III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 IV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 V 개인연금 활성화와 보험산업 대응



I. 개인연금 시장환경 변화

I. 개인연금 시장환경 변화

■ 개인연금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존재

- (사회/경제)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등
- (초점) 60세 정년 의무화,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

정년 의무화 시행 (노동시장)

◆ 주요내용

- 단계적 정년 의무화
 - * 근로자 300인 이상(2016년), 300인 미만(2017년)

◆ 제도시행 효과

- 사업주 부담 vs. 근로자 노후준비 기회 증가

개인연금법 제정 추진 (금융시장)

◆ 주요내용

- 개인연금법 제정을 통한 개인연금체계 정비
 - * 모든 연금상품(적격, 비적격)을 개인연금법에서 관리

◆ 제도시행 효과

- 개인연금운영체계 등 연금시장 환경변화 예상

I. 개인연금 시장환경 변화

■ 위기인가? Vs. 기회인가?

정년 60세 법제화

- 정년연장은 보험산업 측면에서 긍정적

근로자의 추가소득 확보



노후준비 강화 유인 증가



노후자산 축적 (금융자산)

개인연금법 제정

- 개인연금법 제정 효과는 불확실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법체계 정비 시
시장에 대한 영향은 안정적

[기타 의견]

- 종합적 시각에서 제도도입 여부 신중히 결정
- 적격·비적격상품의 특성 충분히 고려

I . 개인연금 시장환경 변화

■ 검토내용

검토단계		주요 내용
환경분석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연장 의의와 관련 이슈 검토 ▪ 정년연장 세대의 노후준비 평가 ▪ 정년제 및 정년연장에 대한 인식
경제분석	정책방향 제시를 위한 통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년연장으로 인한 소득개선 효과 (국민+퇴직연금, 추가저축) → 향후 노후소득개선 위해 개인연금 활성화((신)개인연금 도입) ▪ (신)개인연금 도입에 따른 노후소득개선, 매출, 빈곤 효과 등
대응방안	개인연금 활성화 방향 및 보험산업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연금정책 방향 ▪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 방안 * 개인연금법 제정 시 고려사항



Ⅱ.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II.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1. 정년연장

- 임의제도 → 강제화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노후준비 기회 증대**
- 선진국은 정년연장 추세 : 영국·미국(정년폐지), 독일(65세→67세), 일본(60세 → 65세)

정년연장 관련 추가 이슈

청년층과의 고용대체성 논쟁

- 노동총량설: 세대간 고용대체
- 변동 요인: 임금수준, 생산성, 경기변동, 산업구조, 기술변화 등

임금피크 적용 논쟁

-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연공성 : 강함
-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근속연수 : 짧음

기업(사업주) 부담 논쟁

- 근로기간 연장 외 사회보험 등 고용주 추가 부담 고려
-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개선 등

II.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2. 노후준비 : (1) 노후준비 실태

미흡한 노후준비

- 50대 : 부정 42.6%, 54세~59세 : 부정 39.8% (보험연구원, 2015)
- * 노후준비 안 되는 이유 : 자녀교육비, 결혼비용 등

늦은 노후준비

- 이상적 은퇴준비 시기: 비은퇴자의 25.3% 취업직후 (삼성생명은퇴연구소, 2014)
- * 현실적 은퇴준비 시기 : 자녀대학 이후 자녀 독립기(50~60대)

노후준비자산의 비유동성

- 50대에서 개인연금 및 저축 비중이 낮음
- * 실물자산 구성비: 30대 61.0%, 40대 69.0%, 50대 74.1%, 60세 이상 82.4%

II.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2. 노후준비 : (2) 공적연금

- 공적연금(국민연금) 가입현황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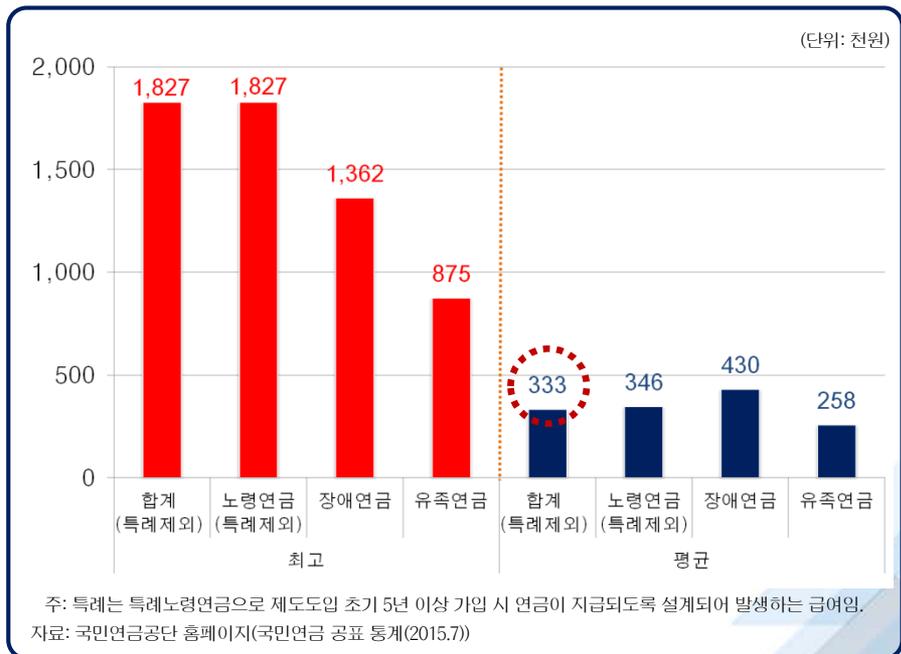
- 높은 사각지대, 감소하는 급여수준 (70%, 60%, 50% → 40%)

공적연금 가입실태 (2014년말 기준)

18~59세 총인구 32,994천명 (100%)					
경제활동인구 22,871천명					
비경제활동인구 10,626천명	공적연금 비적용자 568천명				
	공적연금 적용자 22,401천명				
	국민연금 적용대상 20,957천명				특수지역 연금 1,444천명
	납부예외자 4,665천명	소득신고자 16,386천명			
	장기체납자 1,253천명	보험료 납부자 15,248천명			
32.4%	1.7%	14.2%	3.8%	46.2%	4.4%
소계 16,302천명 (49.4%)			소계 16,692천명 (50.6%)		

자료: 국민연금연구원(2014)

국민연금 연금종별 월평균 지급액



II.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2. 노후준비 : (3) 사적연금

- 사적연금 가입현황 및 평가
 - 낮은 가입률 및 유지율

가구별 개인연금 가입률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전체
전체가구	24.0	35.4	39.0	36.7	36.5
독신가구	23.2	30.9	38.6	31.1	32.1
부부가구	26.4	37.8	39.1	37.5	37.7

주: 독신가구는 미혼가구 및 배우자가 없는 기혼가구 포함.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3), 2013 한국 비은퇴 가구의 노후준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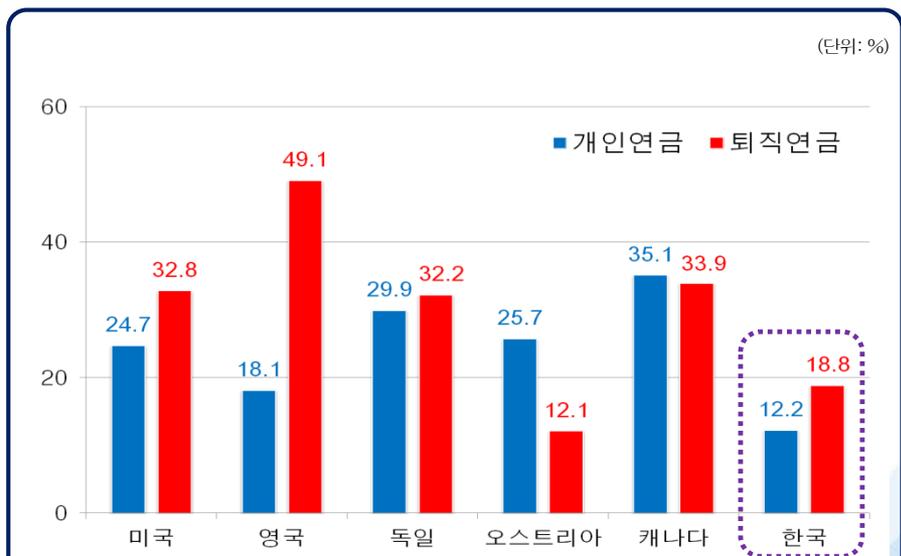
연금저축 경과년도별 계약유지율

(단위: %)

구분	1차년	2차년	3차년	5차년	10차년
유지율	95.5	86	80.2	72.4	52.4

자료: 금융위원회(2014) : 류건식(2014)

주요국의 사적연금 유형별 가입률



주: 1) 생산활동인구(16~64세) 대비 가입률, 2) 임의가입 사적연금만을 대상으로 함.
 3) 독일, 캐나다는 2008년 기준, 그 외 국가는 2009년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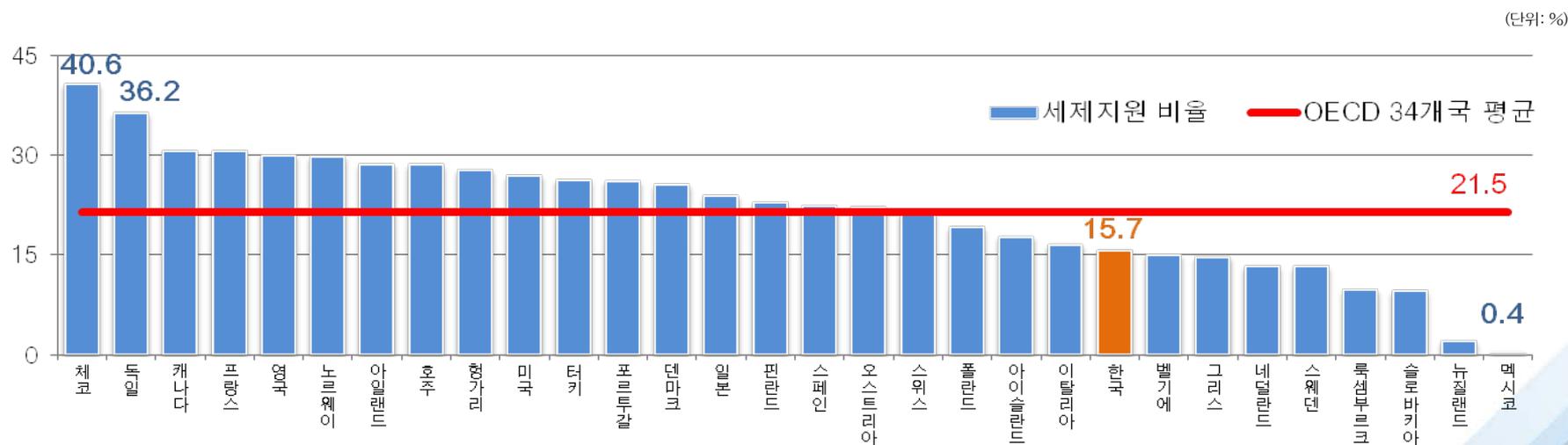
자료: OECD(2011)

II.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2. 노후준비 : 공·사연금 가입현황 평가

- 낮은 지원수준 : 연금세제 지원수준은 OECD 34개국 중 23위
 - 연금저축은 2014년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퇴직직전세대에 대한 추가연금세제 無 [미국: Catch-up Policy, 영국: 한시적 특례연금정책, 아일랜드: PRSA]

국가별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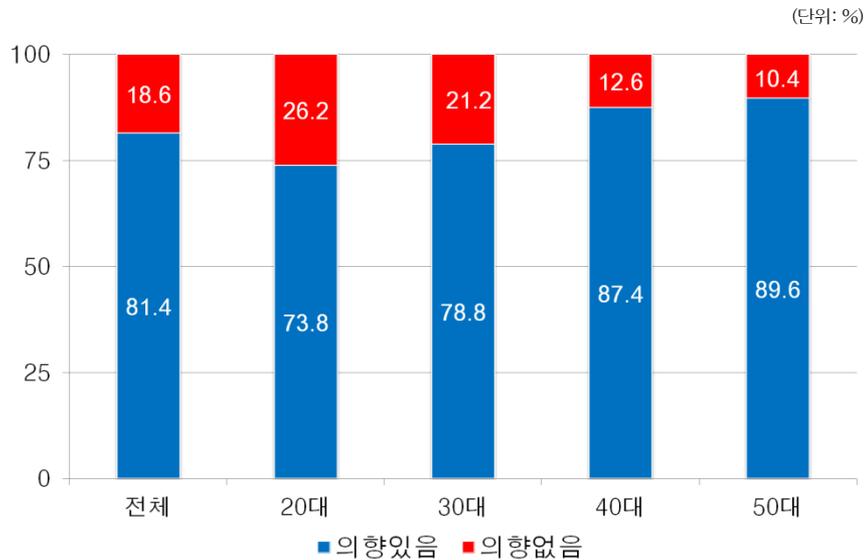
주: 1) 사적연금에 퇴직연금 포함, 2) 기여금액 대비 비율
 자료: OECD(2013), Pension at a glance 2013

II.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3. 정년연장 인식 [보험연구원, 2015]

- 정년 연장 시 60세까지 근무할 의향 : 81.4% (50대 89.6%)
-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것 : 62.3% (50대 59.7%)
 - 임금피크적용 후 합리적 보수: 최종보수기준 70% (41.6%), 80% (38.7%)

재직 직장 내 60세 정년 연장 시 근무의향



주: 농/임/어업, 중졸 이하, 저소득층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 적용에 대한 의견

특성별	적용율	합리적인 보수 수준 (최종보수 대비 %)				
		90%	80%	70%	60% 이하	
전체 (382)	62.3	2.9	38.7	41.6	16.8	
응답자 연령	20대	65.4	4.3	38.6	34.3	22.9
	30대	61.1	2.9	39.1	47.8	10.1
	40대	62.1	0.0	37.3	47.5	15.3
	50대	59.7	5.0	40.0	35.0	20.0

주: 1) 농/임/어업, 중졸 이하, 저소득층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60세 정년 연장 시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것임.

II. 정년연장, 노후준비 및 인식

3. 정년연장 인식 [보험연구원, 2015]

- 크레바스연금(퇴직 후 연금소득 공백기를 대비 위한 개인연금) 추가 가입 의향 26.4%
- 추가 가입 시 월평균 납부액 17.5만 원 (50대 : 16.1만 원)

크레바스연금 인지 및 가입

(단위: %)

특성별	인지 비율	가입 의향 비율	가입하지 않는 이유					
			구매 여유 없음	짧은 보장 기간	타상품 투자가 유리	추가 세제 혜택 없음	기타	
전체 (593)	20.4	26.4	43.6	29.2	19.8	6.7	0.7	
응답자 연령	20대	13.0	36.9	33.6	35.2	22.4	8.0	0.8
	30대	25.7	37.3	36.2	31.9	20.6	9.2	2.1
	40대	23.5	26.7	38.0	31.8	23.4	6.8	0.0
	50대	19.8	22.7	47.1	29.9	18.2	4.3	0.5

주: 1)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2) 연금소득 공백기를 위한 개인연금(크레바스연금) 가입의향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

크레바스연금 가입 시 월평균 납부액

(단위: %, 만원)

구분	월평균 가입 금액	월평균 가입 금액 수준				
		10만 원 미만	10만 원~20만 원	20만 원~30만 원	30만 원 이상	
전체 (883)	17.5	12.0	42.1	28.7	17.2	
응답자 연령	20대	19.7	4.8	48.0	29.6	17.6
	30대	21.0	10.6	29.1	36.2	24.1
	40대	18.8	8.3	35.9	32.8	22.9
	50대	16.1	11.2	46.0	27.3	15.5

주: 농/임/어업은 표본이 적어 통계적 의미가 낮음



Ⅲ.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Ⅲ.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1. 상용근로자 및 정년연장 대상자 추정

-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규모 추정 (상용근로자 10,999천 명(2013년))
 - (1단계 연령 기준) 54세부터 정년을 규정 → 54~59세 인구 대상
 - (2단계 근로자 기준) 54~59세 인구 중에서 임금근로자 추정
 - (3단계 비자발적 퇴직) 54~59세 임금근로자 중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자 추정

사업장 규모별 종사자 수(2013년)

(단위: 천개 소, 천명, %)

사업장 규모	사업장 수	종사자 수	상용근로자 수	기타 종사자 수
30인 미만	1,680 (95.87)	8,330 (54.30)	5,293 (48.12)	3,036 (69.95)
30인~99인	58 (3.29)	2,848 (18.57)	2,178 (19.80)	670 (15.43)
100인~299인	12 (0.67)	1,866 (12.16)	1,537 (13.97)	329 (7.58)
300인 이상	3 (0.17)	2,297 (14.97)	1,991 (18.10)	306 (7.04)
전체	1,753 (100)	15,340 (100)	10,999 (100)	4,341 (100)

주: 1) '기타 종사자 수' 에는 임시·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포함됨. 2) ()안은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고용노동통계포털, 전국, 산업별, 성별,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 (2016년 추정)

(단위: 천명)

연령	인구 수	근로자 수 (A)	비자발적 퇴직비율(B)	정년연장 대상자 수 (A×B)
54세	868	298	9.4%	28
55세	865	202	12.8%	26
56세	843	197		25
57세	807	188		24
58세	771	180		23
59세	734	171		22
전체	4,887	1,237	10.8%	148

Ⅲ.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2. 국민+퇴직연금 소득개선 효과

- 정년연장에 따른 국민·퇴직연금 소득개선(합산소득대체율) 효과

- [임금피크 미적용] 단기 28.2% [3.5%p 증가], 장기 37.1% [6.7%p 증가]

- [임금피크 적용] 단기 26.8% [2.1%p 증가], **장기 35.7% [5.3%p 증가]**

* 단기: 정년연장기간이 대상자에 따라 1~6년(2016년 54~59세), 장기: 정년연장이 6년이 되는 기간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 전후 따른 국민·퇴직연금 소득대체율 개선효과

(단위: %, %p, 년)

구분	국민연금			퇴직연금			전체		
	연장전 (A)	연장후		연장전 (A)	연장후		연장전 (A)	연장후	
		피크전(B)	피크후(C)		피크전(B)	피크후(C)		피크전(B)	피크후(C)
단기 ²⁾	21.4	23.9 (2.1)	23.1	3.3	4.3 (2.8)	3.7	24.7	28.2 (3.5)*	26.8 (2.1)*
중·장기 ³⁾	23.5	28.0 (4.8)	27.3	7.0	9.2 (5.5)	8.5	30.4	37.1 (6.7)*	35.7 (5.3)*

주: 1) 강성호(2015)를 활용하여 추정 2) 2016년 54~59세인 근로자임. 3) 2030년 54~59세인 근로자임. 4) ()안은 정년연장에 따른 가입기간(년) 변화임. 5) ()안은 정년연장 전후의 소득대체율 변화(%p)
 자료: 강성호(2015)를 재정리함

Ⅲ.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3. 저축증가 (노후준비 여력)

- 근로소득 개선 (저축개선 효과) 12.1%

* 은퇴 전·후 기간 동안 평균 소비수준이 동일할 경우 증가하는 소득은 저축으로 정의

정년임무화 조치에 따른 연령별(54세~59세) 소득(저축)개선 효과

(단위: 천원, %)

연령	조기퇴직비율 ¹⁾	월평균 임금소득(A) ²⁾	퇴직비율 고려한 평균소득(a) ³⁾	소득(저축) 개선효과 (A-a)	개선을 (A-a)/a
54세	9.4%	2,184	1,979	205	(10.4%)
55세	12.8%	2,413	2,104	309	(14.7%)
56세		2,098	1,830	269	
57세		2,192	1,912	281	
58세		1,724	1,503	221	
59세		1,762	1,536	225	
합계	10.8%	2,101	1,874	227	(12.1%)

주: 1) 앞에서 제시한 비자발적 조기퇴직 비율임. 2) 고령화연구패널의 2012년 기준 월평균 임금소득임. 3) 정년임무 대상자(조기퇴직자)의 임금소득을 0으로 하여 새로이 산출한 월평균 임금소득임.
 자료: 강성호·신종각(2015)

Ⅲ. 정년연장의 소득 개선 효과

■ 정년연장에 따른 노후소득개선 평가 및 과제

● 노후소득 개선 평가

적정노후소득보장 수준

- 평균소득자 기준 70% 내외 (OECD)

국민·퇴직연금 소득개선 평가

- 합산소득대체율이 장기적으로 35.7% 수준
→ 34.3% 부족 (마련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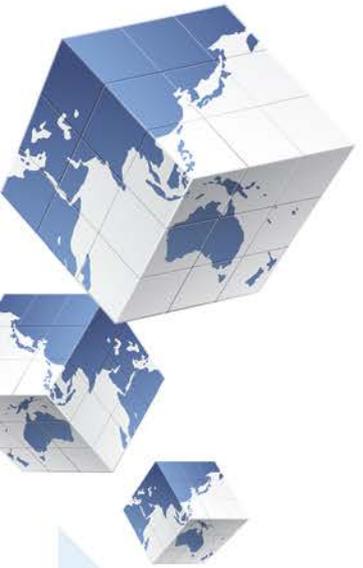
● 정년연장 후 과제와 대응방향

노후준비 여력이 존재하는가?

- 정년연장으로 추가적인 노후준비자금 발생 가능
→ 노후준비여력 = 저축가능액 (해당기간 소득의 12.1%)

추가적인 노후준비 방식은 ?

- 국민·퇴직연금은 강제적으로 규정
- 개인연금 관심 증가 (연금을 노후준비 주요수단으로 인식)



IV.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IV.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1. 분석 목적 및 내용

- [목적] 경제 효과분석을 통해 개인연금 활성화 필요성 제시
- [내용] 노후소득 개선(근로자), 매출 효과(금융산업), 노인빈곤율(정부) 감소
- 특히, 노인 빈곤율이 감소된다면, 세제지원 강화의 정당성 확보 가능

정년연장 대상자의 개인연금 추가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경제주체	분석내용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소득개선 효과 : 소득대체율 개선 효과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 (순조세지출 추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빈곤율(49.6%, 2013년 기준) 수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가?* 순조세지출 (지원에 따른 조세지출 - 기초생활보장비 감소액) 고려
금융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연금 추가가입에 따른 매출효과 (연금시장 확대) : [부록1] 참조

IV.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2. (신)개인연금의 소득보장 효과 : (1) 분석가정

분석가정 (세부내용은 [부록2] 참조)

- 대상: 54~59세 근로자 중 정년연장 대상자
- 퇴직연령 및 가입기간: 60세 퇴직, 54세~59세까지 (신)개인연금 가입
 - * (신)개인연금은 현행 적격개인연금과 유사하게 설정 :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
- 임금피크 : 55세 이후 매년 10% 감소
- 수급기간 및 급여산출 원칙: 종신 (60세 이후 20년), 수지상등

IV.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2. (신)개인연금의 소득보장 효과 : (2) 분석결과

- 20년 간 연금수령 시 소득대체율 : 1.8%(임금피크 미적용), 1.7%(임금피크 적용)
 - 연금수령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킬 경우 각각 7.3%, 6.6%
- 가입기간이 길수록 보장수준 확대
 - 54세(6년) 3.0%, 59세(1년) 0.5%

정년 의무화 조치에 따른 연령별(54세~59세) 소득(저축)개선 효과

(단위: %)

연령 (2016년 기준)	임금피크 미적용		임금피크 적용 ¹⁾	
	5년 연금 ²⁾	20년 연금 ³⁾	5년 연금 ²⁾	20년 연금 ³⁾
54세 (6년 가입)	12.0	3.0	11.0	2.8
55세 (5년 가입)	10.0	2.5	9.0	2.3
56세 (4년 가입)	8.0	2.0	7.2	1.8
57세 (3년 가입)	6.0	1.5	5.4	1.4
58세 (2년 가입)	4.0	1.0	3.6	0.9
59세 (1년 가입)	2.0	0.5	1.8	0.5
합계	7.3	1.8	6.6	1.7

주: 1) 분석가정 참조 2) 60세~64세까지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의 소득대체 3) 60세 이후 중신으로(20년) 개인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의 소득대체율

IV.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3. [신]개인연금의 노후빈곤완화 효과

■ 분석가정 (세부내용은 [부록3] 참조)

-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 근로자)가 65세~70세 되는 상황 고려
- 소득가정: 경상소득 → 경상소득+(신)개인연금
- 빈곤선: 노인빈곤율 (49.6%) 활용하여 빈곤선 추정
- 활용자료: 국민노후소득보장패널자료 (2012년 기준)

■ 분석결과 (세부내용은 [부록4] 참조)

[신]개인연금의 탈빈곤 효과 (20년 수급)

구분	가입 후		탈빈곤 효과			빈곤율 (개선효과)
	가입 전	비빈곤	빈곤	전체		
54세~59세 가입	빈곤	2.4	97.6	100.0	48.7 (△1.2)	
50세~59세 가입	빈곤	3.5	96.5	100.0	48.1 (△1.7)	

주: 1) 동 집단의 초기 빈곤율은 49.8%임. 2) ()안은 초기 빈곤율(49.8%)에서 해당 집단의 빈곤율을 뺀 수치로 단위는 %p임.

IV. 개인연금 추가가입 효과

4. 재정투입 정당성: 다른 제도와의 비교

- 54세~59세까지 개인연금에 추가 가입한 후 퇴직 시 20년 수급 시 노인(65세~70세) 빈곤율은 1.3%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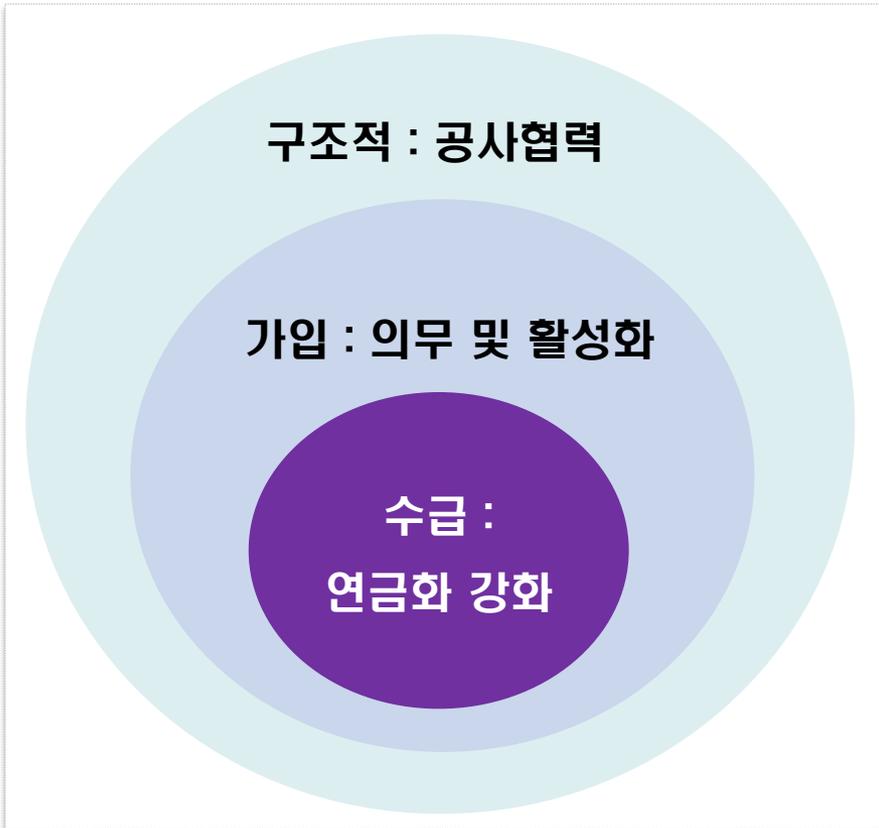
* 기초연금은 전액 조세지원, (신)개인연금은 일부 조세지원+보험료

기초연금제도와의 빈곤개선 효과 비교

구분	대상	자원	효과
기초연금	노인인구의 소득인정액 하위 70% 대상	조세 (650만명 × 70% × 20만원 × 12월 = 10.9 조원) * 11조원 (2016년) 추정(복지부)	빈곤율 10.4%p 감소 (45.1% → 34.7%) : 이용하·김원섭(2013)
(신)개인연금	정년연장 대상 연령층	보험료 + 조세 (4,507~6,531억) * 조세: 1,237천명 × 276만원(최고 400만원) × 13.2% = 4,507억원(최고 6,531억원) (주: 1,237천명: 54~59세 근로자수, 276만원: 2014년 연금 저축 평균 연간납부액)	빈곤율 1.3%p 감소 (49.6 → 48.3%(49.6% × 2.7%))

V. 개인연금 활성화와 보험산업 대응 방향

연금정책 기본 방향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정책방안

정년연장 세대에 특화된 연금상품 개발

건강상태를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장수위험을 고려한 연금상품 개발

V. 개인연금 활성화와 보험산업 대응 방향

1. 연금정책 기본 방향

- 사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사협력

- 목표 소득대체율(70%) 달성을 위한 공·사적연금 목표 수준 설정
- 1980년대 선진국의 공사협력 사례 참고 (사적연금 활성화 방향)

- 개인연금 가입강제 및 활성화 유도

- 리스터연금(독), catch up plan(미) 등 해외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도입 검토
- 즉, 세제혜택 및 보조금 정책을 통한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 추진
- * 세제적격 및 비적격 연금상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책 추진 필요

- 연금화 유도 및 강화

- 종신행 연금 수급원칙 (세제혜택과 연금화 강제성의 상관성 강화)
- 세제혜택 및 강제성을 가입단계보다 수급단계에서 보다 강하게 적용

V. 개인연금 활성화와 보험산업 대응 방향

2.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 (공·사협력 전제)

● 공사연계연금(가칭) 도입

- [신]개인연금으로 인증형 크레바스연금(가칭) 도입 (1단계)
 - [내용] 노후준비가 부족한 베이비부머 등 55세 이후 근로자에 대해 타 연령층 대비 강한 세제혜택(혹은 보조금)을 추가 제공하여 가입유인 제고
 - [조건]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고 저소득층일수록 혜택 강화, 유지조건 강화 및 수급 시 **종신연금화 유도**

- 인증형 크레바스연금(가칭)에서 공사연계연금(가칭)으로 확대 (2단계)
 - [내용] 크레바스연금으로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빈곤 완화가 어려울 경우 전연령층 대상으로 확대 (독일 리스터연금 참고)
 - [조건] 인증형 크레바스연금(가칭)과 원칙적 동일, 수급 시 **종신연금화 원칙**
 - * 종신연금화에 따른 발생리스크는 추가적 재정지원 고려 (준공적연금 수준으로 관리)

V. 개인연금 활성화와 보험산업 대응 방향

2.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특화된 정책방안 (공·사협력 전제)

● 건강 및 장수리스크 관련 연금상품 개발

- 비표준형 연금, 고연령거치연금 개발
 - 연금이 필요한 집단에 대한 적극적 연금상품 공급 (노인빈곤화 가능 집단)

● 통계 집적 및 리스크 관리능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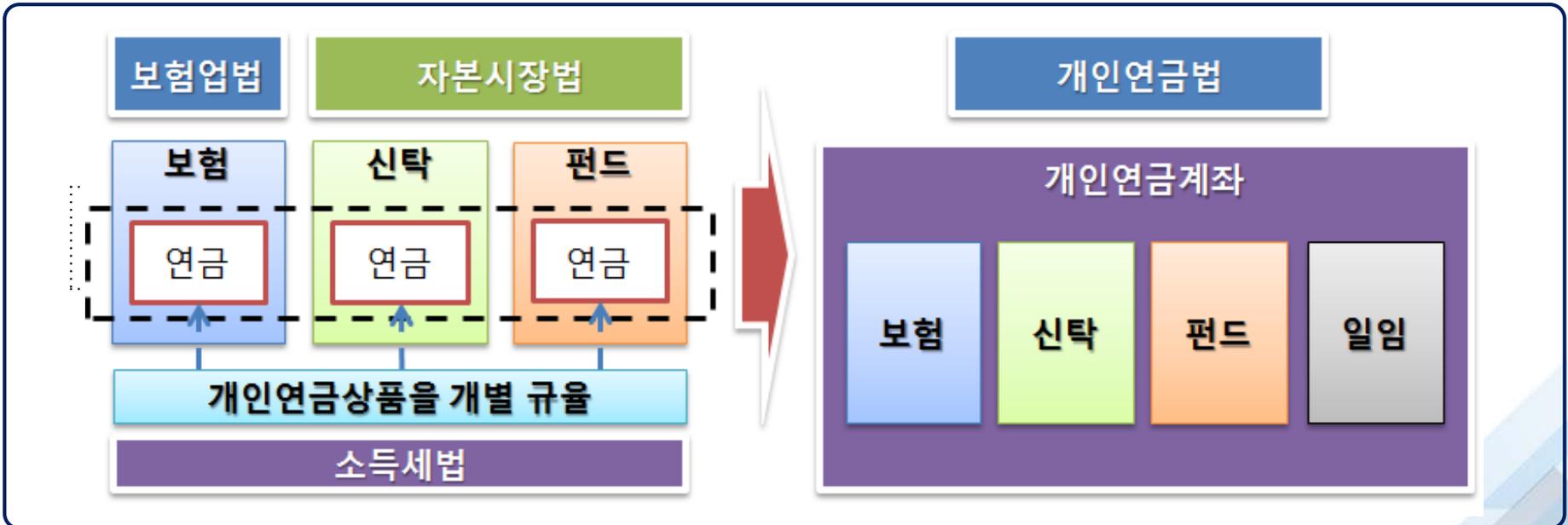
- 관련 통계 집적 및 공유
 - 고령층 위험률 정확한 추정에 활용 (범정부 차원)
- 통계기법 및 리스크 분석 능력 제고
 - 가입연령대별, 담보위험별, 보장금액별

[추가 검토사항] 개인연금법 제정과 고려사항

■ 개인연금법 제정의 의의

-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자산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관련 제도를 정비 (제정(안) 내용은 [부록5] 참조)

개인연금법 제정의 기본 방향



[추가 검토사항] 개인연금법 제정과 고려사항

■ 개인연금의 현 주소

- **현행 제도에 의하면 세제적격 및 비적격 상품을 구분하여 관리**
 - 세제적격은 노후소득보장적 관점에서 연금계좌로 관리
 - 세제비적격은 장기저축성보험 관점에서 보험차익 비과세로 관리

개인연금 시장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누적	연간
개인연금 소계 (A+B)	215.98	244.37	269.74	292.16 (100.0)	22.42(100.0)
세제적격 (A)	78.81	89.8	100.84	108.69 (37.2)	7.85(35.0)
- 보험	59.51	67.81	76.79	81.06 (27.7)	4.27(19.0)
- 신탁	12.23	13.7	14.46	15.27 (5.2)	0.81(3.6)
- 펀드	4.85	5.65	6.5	8.84 (3.0)	2.34(10.4)
- 기타	2.22	2.64	3.09	3.52 (1.2)	0.43(1.9)
세제비적격 (B)	137.17	154.57	168.9	183.47 (62.8)	14.57(65.0)

[추가 검토사항] 개인연금법 제정과 고려사항

■ 개인연금법 제정 및 정책변경 시 고려사항

- 연금성격 및 도입 취지를 고려한 정책 추진
 - 세제적격 : 고령화에 따른 노후준비 자산 확보 (다층노후소득보장 관점)
 - 세제비적격 : 장기저축성보험 관점에서 도입
- 제도적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 준비 철저
 - 법 제정에 앞서 법안 내용의 실익에 대한 우선적 검토 필요
 - 노후보장체계의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 불안정성 최소화
- 종합적이고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 추진
 -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 필요
 -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균형적이고 신중한 접근 필요

감사합니다



[부록1] (신)개인연금 가입에 따른 매출효과 (추정)

- 2016년에 54세~59세인 대상자가 가입가능 기간만큼 가입 시 (임금피크 미적용)
 - 2016년 연간 추정매출액은 529억원
 - 2016년 54세인 가입자가 59세까지 가입 시 발생하는 총 추정매출액은 519억원

정년연장에 따른 개인연금 시장 확대 효과 (2016년 가입효과)

(단위: 억원)

연령 ('16년 기준)		연도	'16	'17	'18	'19	'20	'21	총매출 효과 ²⁾
임금피크 미적용 ¹⁾	54세		94	91	88	85	82	80	519
	55세		89						
	56세		83						
	57세		91						
	58세		84						
	59세		88						
	합계		529						
임금피크 적용 ¹⁾	54세		94	82	79	76	74	72	476
	55세		80						
	56세		75						
	57세		82						
	58세		76						
	59세		79						
	합계		485						

주: 1) 임금피크 적용 여부 및 적용기준은 분석기정 참조 2) 총매출 효과는 각 세별로 합산(2015 기준 현가화) 3) 가입률 반영하여 산출

[부록2] (신)개인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 분석가정

■ 분석가정

구분	내용
분석대상	54~59세 근로자 중 정년연장 대상자
자발적 퇴직 비율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퇴직비율 16.1% 적용(고용노동부, 2015)
퇴직 연령	60세 퇴직
소득가정	노후소득보장 패널조사 2012년 기준 자료(2015년 가치로 환산)
임금피크	55세 이후 매년 10% 감소
개인연금 가입 기간	2016년부터 개인연금을 가입하여 59세까지 유지
개인연금 보험료율	소득의 10% (※ 생명보험협회, 추가 가입 시 월보험료 21.8만 원)
개인연금 가입율	16.7% (세제혜택 추가 시 연금상품 가입의향 비율)
개인연금 수급연령	60세~64세 수령 (혹은 60세 이후 종신, 20년 수령)
연금급여수준	‘수익비=1’ 이 되는 연금급여수준 (수지상등원칙)
기타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기금운용수익률, 할인율 모두 3%로 적용 (※ 수수료 미반영)

[부록3] (신)개인연금 노후빈곤 완화효과 : 분석가정

■ 빈곤률 분석가정

- 세제지원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년연장 대상자가 개인연금 추가 가입 후 노인이 되었을 때 빈곤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함

구분	내용
분석대상 및 분석자료	정년연장 대상자(54~59세 근로자)가 65세~70세가 되는 상황을 고려함 ※ 2016년 정년연장 대상자가 은퇴하여 65세~70세(2027년)가 된 상황을 가정함. ※ 활용자료: 노후소득보장 5차 패널조사 (12년 기준)
소득가정	노후소득보장 패널조사 소득 자료(2012년 기준) 활용 ※ 임금상승률 연간 3% 적용하여 2015년 가치로 환산 ※ '경상소득' vs '경상소득+(신)개인연금액'
빈곤율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활용 (2012년 49.6%) → 빈곤선 추정
빈곤 완화 효과	개인연금 추가 가입 전후를 통해 노후빈곤율 감소 효과 추정 ※ 다른 소득은 변화가 없고 (신)개인연금 가입여부에 따른 노후소득만 변화가 있는 것으로 가정
기타	기본 가정을 원용 ※ 가구의 다른 경제적 상황은 불변을 가정(예, 개인연금 증가로 다른 노후자산을 줄이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설정)

[부록4] (신)개인연금의 노후빈곤완화 효과 : 분석결과

● 54세~59세까지 개인연금에 추가 가입하고 65세 이후 20년 수급시

- 빈곤을 2.4% 감소 (50세부터 추가 가입 시 3.5% 감소)

* 65세 이후 5년 확정연금을 받는 경우로 가정시 빈곤을 2.7% 감소 (50세부터 추가 가입 시 4.2% 감소)

[신]개인연금 가입 전 · 후 탈빈곤 효과 (노인전체)

(단위: %)

구분		가입 후 가입 전	탈빈곤 효과			빈곤율 (개선효과)
			비빈곤	빈곤	전체	
54세~59세 가입	5년 연금수급	비빈곤	100.0		100	48.5 (△1.3)
		빈곤	2.7	97.3	100	
		전체	51.5	48.5	100	
	20년 연금수급	비빈곤	100.0		100	48.7 (△1.2)
		빈곤	2.4	97.6	100	
		전체	51.3	48.7	100	
50세~59세 가입	5년 연금수급	비빈곤	100.0		100	47.8 (△2.1)
		빈곤	4.2	95.8	100	
		전체	52.2	47.8	100	
	20년 연금수급	비빈곤	100.0		100	48.1 (△1.7)
		빈곤	3.5	96.5	100	
		전체	51.9	48.1	100	

주: 1) 동 집단의 초기 빈곤율은 49.8%임.

2) ()안은 초기 빈곤율(49.8%)에서 해당집단의 빈곤율을 뺀 수치로 단위는 %p임.

[부록5] 개인연금법(안) 제정 내용

- 정부는 개인연금법 제정을 통해 개인연금체계 정비 계획
 - * 2016년 6월 ~ : 관계기관협의, 입법예고 / 2016년 중 : 개인연금법 국회제출 예정

개인연금법(안) 주요 제정내용

구분	법(안) 내용 요약
연금 상품	모든 연금상품(적격, 비적격)을 개인연금법에서 관리
개인연금계좌	가상의 '개인연금계좌' 도입을 통해 통합관리
연금사업자	근퇴법 상 사업자와 동일 방식으로 연금사업자 정의
가입자보호	연금상품에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적용
자문 강화	투자자문업자(IFA)로부터 자문을 받아 연금상품 구입
상품 공시 등	공시기준 및 채널의 일원화를 위해 연금포털 활용